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2008. 12

전병목 · 박명호 · 김완석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조세정책에 있어 세부담 형평성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이다. 세부담 형평성은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납세순응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단위 소득세제하에서 유력한 조세회피의 통로는 부부 혹은 가족으로의 소득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증여추정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 과세기준을 부부 혹은 세대단위로 운영하는 예외를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헌법재판소의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판정(2001헌바82)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단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판정(2006헌바112)으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즉 부부단위(혹은 세대) 제도 운영으로 인한 조세부담 차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부 혹은 가족 간 조세회피유인 제거 등을 위해 소득세 과세 단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과세단위의 선택 및 변경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법학적인 정성적 논의에 머물고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법학적 측면에서 개인단위 소득과세단위가 기존의 헌법과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법률 등과 잘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만약 법률체계상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이러한 조항의 취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등도 살펴보고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

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제학적 분석은 우선 이론적인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부부(혹은 가족)에 대한 과세방안을 살펴보고 이러한 방안들이 현재의 과세단위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법학적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제시되는 대안을 이용하여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과세단위 변경이 부부의 한계세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명시적으로 감안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경제학적 분석결과가 정부의 관련 정책방향 등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며 향후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은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가능한 정책대안들에 대한 평가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전병목 박사와 박명호 박사,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김완석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원내세미나 등을 통해 유익한 도움 말씀을 주신 원내 연구위원들과 외부 위원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많은 도움을 준 이은경 주임연구원, 조문경 연구원과 자료와 원고 정리에 도움을 준 최미영 주임연구행정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소득과세 이론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자연인을 독립된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연관된 사회적 존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우리나라 법률체제에서도 유지되었다. 비록 전반적인 소득과세는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부부단위로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과세단위의 차이는 세부담 능력의 반영, 조세회피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지만 법적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부부간 자산이동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2001헌바82)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판정(2006헌바112) 등은 개인단위 소득세제에서 조세부담 회피 방지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부(혹은 세대)를 과세단위로 하는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특정 정책목적을 위한 제도 설계 시 나타날 수 있는 법 적용의 비일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부단위(혹은 세대) 제도 운영으로 인한 조세부담 차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원간 소득분산으로 조세회피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십과세제도, 공동사업장과세제도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과세단위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 및 소득과세 제도의 불일치성은 법률적 일관성과 별도로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취약저소득층 보호 등의 정책적 목표가 고려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제반 법률들을 살펴보고 이의 헌법 합치성과 상호 일관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학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소득 및 재산권 단위의 선택은 법학적 일관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과세단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며, 이에는 한계세율 변화로 영향을 받는 개인의 노동공급 결정, 특히 부부 중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개인단위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제도 변경 시 나타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적 행위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의 과세단위 관련 선행연구는 김완석(2005), 김민호(2005), 노영훈(2002)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단위 문제를 법학적 관점 등에서 검토하여 전문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과세단위 문제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경제학적 측면의 분석은 외국에서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소득과세가 야기하는 시장생산과 가구생산의 인센티브구조 왜곡, 가구 내 일차소득자와 이차소득자간의 노동공급 탄력성 차이에 따른 과세 효율성 문제 등이 고려되었다.

과세단위 변경에 대한 법적 체계분석과 이와 연계된 경제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법학적 분석과 경제학적 분석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는 방안, 경제학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검토, 그리고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까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과세단위 변경 논의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학적 측면에서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단위는 헌법상 혼인과 가

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1항),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헌법 제17조) 조항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도 개인단위 과세제도와 일치하는 부부재산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전반적인 법적 체계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조항도 발견된다. 민법상 허용하는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본질이 부부간의 공유재산의 분할에 가까운 개념이며, 이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부과하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재산공유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입장 차이는 법률의 일관성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개인단위 과세제도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와 공동사업과세제도의 경우, 고소득자들의 합법적인 소득세 부담회피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가족간에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민법상의 조합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 혹은 공동사업과세제도를 적용받음으로써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피하고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혹은 공동사업과세제도를 통한 소득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단위의 조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민법상의 부부재산 관련 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민법상 부부재산제뿐만 아니라 기존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개인비밀 및 자유 보장 조항과도 부합되며 동업기업과세특례 혹은 공동사업과세제도를 통한 조세회피 유인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과세단위의 선택은 법적인 일관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

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과세단위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과세단위를 이미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환하는 것은 개인 및 부부의 경제행위 변동과 이에 따른 세수의 변화, 소득세 재분배 기능의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과세단위와 함께 과세단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변화 규모,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분포의 변화, 대응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바람직한 과세단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은 개인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부부 혹은 가족에 대한 최적과세방법 고찰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전형적인 노동시장 참가패턴을 이용한 최적과세론적 접근으로 부부 중 일차소득자와 이차소득자의 행태를 현실적으로 가정할 경우, 이차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야 함이 제시되었다(Brewer, Saez, and Shephard; 2007). 이러한 결과는 개인 혹은 부부 등 선택 가능한 소득 과세단위 중 어떠한 것도 최적과세와 일치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부부합산누진과세보다는 중립적인 개인단위과세가 최적에 가까운 방안임을 시사해 준다. 실제 정책 현실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낮아질 경우, 이차소득자의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최적과세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법체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선택가능한 선택적 2분2승제의 전환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가능한 정책 대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변경의 득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과세단위 변경 시 발생가능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영향분석은 개인의 노동공급 결정과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조세 및 소득 관련 변화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개인(혹은 부부)의 노동공급 결정이 중요한 것은 과세단위가 변경됨으로 인해 개인이 직면하는 한계세율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노동시간의 변화보다는 노동시장 참가 결정이 중요함을 반영하여 노동시간의 탄력성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노동시장 참가율탄력성은 한국노동패널 8~9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철인(2006)과 Leuthold(1984)이 사용한 '전통적 가구모형'에 따라 남성가구주의 경우 일차적인 근로소득자(primary income earners)로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가행위는 여성배우자의 노동시장 참가행위 및 그 결과인 여성배우자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여성배우자는 가구 내에서 이차적인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가구 전체의 비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남성가구주의 근로소득에도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Heckman이 제시한 2단계 추정법을 통해 표본선택편의 등 계량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한 후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가구주의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탄력성이 약 0.0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배우자의 경우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탄력성이 약 0.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내 부부의 경제적 역할이 남성이 대부분인 가구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통계와도 일치한다.

탄력성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선택적 2분2승제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택적 2분2승제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의 한계세율이 높아지기는 하나 전반적인 가구소득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할 경우 조금 더 낮아지게 되나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세수중립성을 가정할 경우, 가구의 세전소득은 개인단위하에서의 99.71% 수준에 이른다.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세율인상으로 보전할 경우 필요한 소득세율은 현재 소득세율의 213.6%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부단위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 소득의 한계세율이 개인단위 과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2배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함을 보여준다. 과세단위 변경으로 부부가 부담하는 평균소득세율은 5.32%로 개인단위하의 4.84%보다 0.48%p 높아지게 된다. 균형세율의 상승은 노동시장 참가율 하락에 따른 과세기반 축소와 평균소득 기준과세로 인한 면세자 계층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즉 총 과세대상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제도변경 이전과 동일한 세율을 조달하기 위한 세율은 이전보다 높아지게 된 것이다.

계층별 소득감소율은 전반적으로 중상위 계층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10분위 소득감소율은 0.4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참가 결정이 민감한 여성의 소득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계층별 소득세 부담 변화는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지 않는데, 소득10분위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다른 분위들의 세부담은 소폭 감소하게 된다. 10분위 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과세단위 변경에 따라 개인단위 선택 시보다 세부담이 높아지는데 이는 과세단위 변경에 따라 많은 가구가 면세점 이하 가구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세부담 계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9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는데 이는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한계세율 인하 효과가 평균적인 세율 인상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니계수도 소폭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개인단위 경우 지니계수는 0.41819에서 변경 시 0.41648로 개선된다. 전반적으로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가유인의 하락으로 세율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개인단위 과세는 헌법, 민법 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과 납세자의 조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혹은 가구)단위 과세의 유용성도 잘 알려져 있다. 현실적 제도운영 상황도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혹은 가구)단위 제도의 혼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적조세론의 결과와도 잘 부합한다. 이러한 과세/지원 제도의 불일치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동 방안을 도입할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인해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미미하게 감소하며 소득세의 재분배기능은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기적으로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세단위의 변경으로 향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라는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다. 장기 성장을 위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은 오랫동안 미국의 소득세제상 과제인 혼인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현재 근로자의 낮은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과세단위 변경 효과가 크지 않게 나타났지만, 탄력성의 변화 가능성 등도 존재하여 향후 과세단위 변경의 역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과세단위 문제는 기존의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문제는 실질귀속의 원칙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가구단위 고려문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 재산분산에 따른 조세회피 등의 문제는 과세단위의 변경보다는 증여추정 등 기존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하는 과세단위 변경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I. 서론	19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24
1. 과세단위의 헌법적 검토	24
가. 문제의 제기	24
나. 소득세 과세단위와 헌법 제36조 제1항과의 관계	25
다. 소득세 과세단위와 헌법 제17조와의 관계	29
2. 과세단위의 재산법적 검토	31
가. 우리나라의 과세단위의 재산법적 검토	31
나. 주요 국가의 과세단위의 재산법적 검토	50
3. 과세단위의 다른 조세제도와와의 체계적 검토	78
가. 동업기업과세특례와의 관계 검토	78
나. 공동사업과세와의 관계 검토	81
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와의 관계 검토	85
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증여세과세와의 관계	88
4. 소결	92
I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94
1. 이론적 분석	95
가. 배경	95
나. 선행연구 및 이론적 분석	100
2. 노동시장 참여유인 변화	111
가. 분석자료 개요	111

나. 분석자료의 특성	115
다. 분석모형	116
라. 분석결과	119
3.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127
가. 선택적 2분2승제로의 제도변경 효과	132
나. 세수중립적 과세단위 변경	140
4. 소결	143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147
참고문헌	154
부 록	158
〈부록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요약문(2006헌바112)	159
〈부록 2〉 가구과세에 대한 Kaplow(1992)의 접근	177

표목차

〈표 II- 1〉 배우자간 잉여액의 산정	60
〈표 III- 1〉 1~9차년도 KLIPS 설문지의 구성	114
〈표 III- 2〉 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	116
〈표 III- 3〉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남성가구주	120
〈표 III- 4〉 가구주의 가상 세후 근로소득의 OLS추정결과	121
〈표 III- 5〉 경제활동참가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 남성가구주	122
〈표 III- 6〉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여성배우자	124
〈표 III- 7〉 배우자의 가상 세후 근로소득의 OLS추정결과	125
〈표 III- 8〉 경제활동참가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 여성배우자	127
〈표 III- 9〉 분석대상 가구 부부의 구성 및 경제활동	130
〈표 III-10〉 분석대상 가구의 기초 통계량	131
〈표 III-11〉 선택적 2분2승제에 따른 소득 및 세부담 변화	134
〈표 III-12〉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변화	135
〈표 III-13〉 부부소득 및 배우자소득 비율 변화	136
〈표 III-14〉 평균소득세율과 사회보장기여율 변화	139
〈표 III-15〉 세수중립적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소득 및 세부담 변화	140
〈표 III-16〉 세수중립적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변화	141
〈표 III-17〉 세수중립 과세단위 변경시 소득수준과 평균세율 변화	142

〈표 Ⅲ-18〉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143
〈부표 1〉 OECD국가들의 근로소득 과세단위(2006~2007)	158

그림목차

[그림 Ⅲ-1] 소득세제 목표들간의 상충성	98
[그림 Ⅲ-2] 사회후생(w)과 한계세율비 (ρ =이차소득자/일차소득자)의 관계	102

I. 서론

소득과세 이론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자연인을 독립된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연관된 사회적 존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우리나라 법률체제(소득과세 포함)에서도 유지되었다. 비록 전반적인 소득과세는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부부로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과세단위의 차이는 세 부담 능력의 반영, 조세회피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지만 법적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부부간 자산이동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2001헌바82)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판정(2006헌바112) 등은 개인단위 소득세제에서 조세부담 회피 방지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부(혹은 세대)를 과세단위로 하는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특정 정책목적을 위한 제도 설계 시 나타날 수 있는 법 적용의 비일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 즉 부부 단위(혹은 세대) 제도 운영으로 인한 조세부담 차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 형평성차원에서 가구원간 소득분산으로 조세회피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십과세제도, 공동사업장과과세제도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과세단위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세액공제제도인 근로장려세제(2008년),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는 개인단위 소득과세와 관계없이 가구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즉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특정 소득구조하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편모/편부의 경우가 부부보다 높은 공제혜택을 받게 되어 결혼여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로 혼인한 부부의 생활비 절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로 인식되고 있다¹⁾.

과세기준의 일치성에 대한 문제는 민법에도 존재하는데 대법원은 혼인중인 부부의 재산에 대해 부부별산제를 유지하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부부의 재산은 혼인중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만 이혼의 경우 개인별 소유형식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혼인중 재산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 및 소득과세 제도의 불일치성은 법률적 일관성,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취약저소득층 보호 등의 정책적 목표가 혼재된 결과이다. 소득행위와의 일치성을 위해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별산 재산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부단위 과세를 도입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인단위 소득과세에도 불구하고 생활형편을 고려하기 위해 부부단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제활동 및 세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부부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제반 법률들을 살펴보고 이의 헌법 합치성과 상호 일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학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소득 및 재산권 단위의 선택은 법학적 일관성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과세단위의 결정은 개인의 혼인결정 및 부부 중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미 특정한 형태로 제도를 운

1) 가구단위 제도운영에 대한 위헌 신청 등의 행위가 없는 것으로부터 판단한다.

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도 변경이 광범위한 경제적 행위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중인 조세제도의 과세단위 변경은 막대한 조세수입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동 비용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제도 변경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심대할 경우에는 과세단위의 문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과세단위 변경에 적절한 이행과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단위에 대한 논의는 법학적 분석과 그로 야기되는 경제적 영향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기존연구는 2000년대 초반 부부 자산합산 과세의 위헌결정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완석(2005), 김민호(2005), 노영훈(2002)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단위 문제를 법학적 관점 등에서 검토하여 분석의 폭이 넓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과세단위 문제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구체적으로 김완석(2005)은 소득세 과세단위를 법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며 기존의 재산분할청구제도, 상속에 있어 기여분제도와와의 조화를 위해 선택적 부부단위 과세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경제학적 측면의 분석은 외국에서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소득과세가 야기하는 시장생산과 가구생산의 인센티브구조 왜곡, 가구내 일차소득자와 이차소득자간의 노동공급탄력성 차이에 따른 과세효율성 문제 등이 고려되었다. Kaplow(1992)는 효율성 기준을 적용하여 가구의 자원공유 정도, 규모의 경제 존재 여부, 가구원간의 이타성, 자녀양육비를 부모의 비용으로 볼 것인가 여부 등에 따라 가구에 대한 과세수준을 제시하였다. Piggot and Whalley(1996)는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는 가정생산을 고려하여 과세단위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Brewer, Saez, and Shephard(2007)는 일차소득자와 이차

소득자의 행태 변화 방식을 반영한 가구의 최적과세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과세단위가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세단위에 대한 분석은 초기 소득세를 설계할 때에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나 이미 특정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소득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검토가 없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제도별로 개인단위와 가구단위를 혼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법학적 일관성과 안정성 측면의 분석을 통해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해결방안들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의 영향분석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는 이론적 분석이 가지는 현실성의 문제를 보완하고 제도 변경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과세단위 변경이 소득재분배, 근로유인 및 노동공급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제도 변경에 따른 이행과정의 문제로 과세단위들 간의 경제적 우위성과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이행부담과는 달리 최근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도구로 이용되는 근로장려금제도는 과세단위 변경시 제도 운영의 행정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법학적 분석과 경제학적 분석을 동시에 실시한다. 법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는 방안, 경제학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검토, 그리고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까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과세단위 변경논의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외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관련 사례, 우리나라 민법 등의 체계분석이 법학적으로 고려된다. 직접적으로 소득과세뿐만 아니라 소득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에 대한 재산과세,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상위법으로서의 헌법, 기타 소득과세제도와의 관계를 일관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경제이론적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부부의 노동시장 참여 행태 효과도 분석한다. 최종적으로는 법학적 분석에서

제시된 대안을 부부과세 이론에 따라 도출된 한국적 노동시장 참여행태 모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한계세율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고려한 것은 본 연구의 큰 기여라 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소득 규모, 소득재분배 효과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은 결론이다.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은 헌법, 재산과세와 다양한 소득과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과세원칙의 불일치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최상위 법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헌법과의 일치성을 분석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소득과세 방법론을 살펴봄으로써 수직적 조화관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재산과세와 소득과세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데 이는 재산과세 대상인 자산이 소득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져 소득과세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세법과의 일관성을 분석한다. 이중과세 조정과 기업활동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과세제도를 세부담 회피 등의 측면에서 과세단위와 연관하여 분석한다.

1. 과세단위의 헌법적 검토

가. 문제의 제기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의 기본원리 및 헌법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소득세 과세단위의 헌법적 검토는 특정한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규정이 헌법의 기본원리 및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소득세 과세단위에 있어서 소비단위주의를 취하면서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할 경우, 즉 소비단위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할 경우에 소비단위합산비분할주의에 관한 규정이 위헌을 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7년에 부부단위합산비분할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25

주의에 관한 소득세법 제26조가 기본법 제6조 제1항(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²⁾.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를 규정하고 있던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제1항이 혼인한 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³⁾. 그러므로 소득세의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세대단위합산비분할주의나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의 헌법적 검토는 더 이상 논의의 필요성이 없다.

소득세의 과세단위와 관련한 위헌 여부에 관한 논의는 현행 헌법 아래에서 기혼부부에 대하여 개인단위주의 또는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가 헌법의 원리 및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문제로 집약된다. 그리고 현행 헌법 아래에서 기혼부부에 대하여 개인단위주의 또는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를 채택할 경우에 개인단위주의 또는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과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나. 소득세 과세단위와 헌법 제36조 제1항과의 관계

1)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과 내용

가) 의의와 법적 성격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여 성

2) 1957. 1. 17., BVerfGE Bd. 6, S. 55.

3)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⁴⁾.

이와 같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⁵⁾. 자유권이라는 견해, 생존권이라는 견해, 평등권이라는 견해, 제도보장이라는 견해, 생존권이면서 제도보장이라는 견해, 자유권이면서 제도보장이라는 견해, 원칙규범과 제도보장과 자유권이라는 견해, 원칙규범과 제도보장과 생존권이라는 견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각건대 헌법 제36조 제1항은 공법과 사법의 전 영역에 대한 원칙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국가공동체의 객관적 질서를 형성하는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⁶⁾.

4) 계획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p. 814.

5) 계획열, 위의 책(pp. 715~817;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6, pp. 596~60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p. 731.

6) 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1헌바82.

〈판결요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더욱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적 분석 27

나) 구체적인 내용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적극적으로는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기존의 혼인과 가족제도의 존립을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장려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⁷⁾.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이라는 제도의 기본형태, 즉 일부일처제·이성간의 결합·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혼인·평생 동거·부모와 자녀의 포괄적 공동체로서의 가족·가족 상호간의 협동과 보호의무 등을 헌법적으로 보장한다.⁸⁾

둘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이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순수한 합의에 의한 혼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혼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 배우자의 선택, 혼인시기의 선택 등은 개인적 결단의 문제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강제할 수 없다⁹⁾.

그리고 혼인 및 가족생활의 내부 영역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형성의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의 성립과 유지에 있어서, 즉 사적 영역인 내부영역에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¹⁰⁾.

7)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5, Rdnr. 458; A. Schmitt-Kammiller in : M. Sachs, Grundgesetz Kommentar, Art. 6, Ehe und Familie, 1996, Rdnr. 17.

8) 계획열, 앞의 책, p. 814.

9)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등(병합).

10) 계획열, 앞의 책, p. 814.

2) 소득세 과세단위와 헌법 제36조 제1항과의 관계

가) 개인단위주의와의 관계

소득세 과세단위로서 개인단위주의가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가 된다. 소득세 과세단위로서 개인단위주의는 근대적 자유주의의 원리 및 세제의 혼인 중립성의 요청에 합치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이 소득세 과세단위로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독신자의 경우는 물론이고 기혼부부의 경우에도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개인단위주의는 독신자이든 기혼부부이든 누구에게도 혼인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와의 관계

소득세 과세단위로서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가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는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 중 부부단위균등합산분할주의(예: 독일의 2분2승제)가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분2승제 아래에서의 기혼부부는 그 부부가 각각 소득세를 과세받는 경우보다 소득세의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2분2승제를 채택할 경우에 기혼부부는 맞벌이부부로서 그 두 사람의 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가 아닌 한 같은 소득금액을 얻는 2인의 독신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보다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독신자는 자신들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기혼부부가 부담하는 소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29

득세보다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2분2승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2분2승제는 소득자로 하여금 단지 미혼이라는 이유로 기혼자보다 세제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분2승제는 부부의 생활실태와의 부합성, 현행 민법상의 부부재산제와의 조화,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의 방지,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의 합치성, 과세 형평성의 확보 등과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2분2승제가 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기혼부부를 독신자보다 세제상 우대함으로써 기혼부부와 독신자를 세부담의 크기에 있어서 차별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소득세 과세단위로서의 2분2승제는 기혼부부의 경우는 물론이고 미혼자의 경우에도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다. 소득세 과세단위와 헌법 제17조와의 관계

1) 헌법 제17조의 성격과 내용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이와는 별도로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구체적으로는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으로 나눌 수 있다.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전

개하는 것과 평온한 사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간섭받지 않을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사적생활의 공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인격적 징표의 타인에 의한 이용 등 비밀영역 또는 인격적 영역의 불가침을 그 내용으로 한다¹¹⁾.

이와 같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고 하겠다¹²⁾.

2) 소득세 과세단위와 헌법 제17조와의 관계

근래에 이르러 특히 부인의 경제적 활동이 두드러짐에 따라 점차 부인이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정보가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의 경우에는 부부가 소득세의 합산신고를 위하여 각자의 소득자료를 공유하여야 하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어렵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개인단위주의 경우에는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자료에 관한 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여지가 적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단위주의가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하겠다.

다만,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와 개인단위주의 중에서 과세단위의 선택을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에는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라 할지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1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p. 38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pp. 486~48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pp. 447~448.

12) 계획열, 앞의 책, p. 399.

2. 과세단위의 재산법적 검토

가. 우리나라의 과세단위의 재산법적 검토

1) 부부재산제의 개요

우리나라의 민법은 부부재산제로서 부부재산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부간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¹³⁾. 다만, 재산관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부부별산제 아래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한다. 그러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다른 쪽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는 달리 다른 쪽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여분제도와 법정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3) 우리나라에서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어 등기된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8건뿐이라고 한다(이강원, 「부부재산계약」, 재판자료 제101집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上)』, 법원도서관, 2003, p. 35 주석 30).

가) 혼인기간 중의 재산관계

(1) 부부재산계약제

(가) 부부재산계약제의 의의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부간의 재산관계가 정하여진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체결하는 약정인데, 그 법적 성질은 혼인당사자의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임과 동시에 장래 발생될 혼인을 전제로 한 혼인에 부종된 신분계약이다¹⁴⁾.

부부재산계약제의 유형은 크게 선택적 부부재산계약제와 비선택적 부부재산계약제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비선택적 부부재산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선택적 부부재산계약제란 민법에서 전형적인 재산계약의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어떤 내용의 재산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 놓고 있는 방법이다.

(나)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당사자와 계약 체결의 시기

혼인을 앞 둔 남녀는 혼인성립 전에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할 재산의 귀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는 장래 혼인을 하려고 하는 남녀이다¹⁵⁾.

14) 김병두, 「부부재산계약론」,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p. 132.

15) 이미 혼인이 성립하고 난 후의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부부재산계약은 민법이 인정하는 부부재산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부부재산계약으로서의 효력을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33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을 앞둔 남녀가 혼인성립 전에 약정을 하여야 한다¹⁶⁾. 부부재산계약에 대하여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성립 전까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등기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는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民法 제892조 제2항). 혼인 중에 계약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남편의 부당한 압력으로 말미암아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¹⁷⁾.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혼인 중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법원에 청구하여 그 관리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② 부부재산계약의 형식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의 체결형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형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술에 의한 계약도 유효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의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면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서가 필요한 것이다.

갖는다(김병두, 앞의 논문, p. 136; 조은희·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p. 23).

16)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시기에 관하여는 혼인성립 전에만 인정하는 입법례(예: 프랑스, 일본)와 혼인성립 전후를 묻지 않고 허용하는 입법례(예: 독일, 스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의 입법례에 따르고 있다.

17) 한봉희, 『가족법』, 도서출판 푸른세상, 2005, p. 82.

(다)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부부재산계약에서는 주로 부부재산의 소유관계·관리 및 처분관계·채무의 부담 내지 책임관계·청산관계·혼인생활비용부담관계 등을 정한다¹⁸⁾.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의 유형 중 비선택적 부부재산계약제를 채택하여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전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맡겨놓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민법상의 법정재산제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척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인당사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 또는 남녀평등에 위반하는 내용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¹⁹⁾. 위와 같은 제한을 제외하고는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어떤 내용도 부부재산계약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부부재산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당사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법정재산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부부재산계약은 이혼·혼인의 취소·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해소에 의하여 종료한다.

18) 이승우, 「부부재산계약」, 『가족법연구』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1989, pp. 86~87; 김병두, 앞의 논문, pp. 144~147.

19) 이강원, 앞의 논문, pp. 36~37;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p. 115; 조은희·전경근, 앞의 논문, p. 26.

(2) 법정재산제

(가) 법정재산제의 의의

부부가 혼인성립 이전에 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 민법은 제830조부터 제833조까지에서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²⁰⁾.

(나) 부부별산제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서 채택하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20) 2005년 정기국회에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이나 제출된 바 있다. 그 하나는 2005.6.30. 한명숙 등 63인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그 다른 하나는 2005. 7. 19. 이계경 등 61인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위의 개정법률안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연합 등과 같은 여성단체가 오래 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내용을 수용한 것이고, 서울가정법원에 설치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개혁안의 내용과 대체로 같다. 2005. 7. 19. 이계경 등 61인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부 일방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는 주택의 전세금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처분하는 경우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의 동의 없이 개정법률안 제831조의 2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와 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장래의 분할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의 절반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로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산, 즉 특유재산은 그 명의자가 관리·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갖는다. 그러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共有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民法 제830조).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재산의 귀속관계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¹⁾.

① 특유재산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특유재산으로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는 고유재산,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예컨대 부모 등)로부터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고유재산 등으로부터 생긴 수익, 장신구나 의복 등과 같이 각자에게 소유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재산은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각자의 소유이며, 따라서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다른 쪽 배우자는 그 특유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인데,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는 때에 그 재산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실질적인 공유재산

혼인생활 중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면서도 그 명의가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다.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이나 주식

2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pp. 148~150; 김주수, 『주석민법[친족(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p. 517.

등과 같은 금융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혼인생활 중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갈리어 있다.

㉠ 특유재산설

혼인생활 중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²²⁾.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재산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는 다수설에 속하는 공유재산설을 배척하고 특유재산설을 지지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혼인 중의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엄격한 부부별산제의 입장을 견지하여 부부 한 쪽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한쪽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²³⁾. 그러므로 부부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이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의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²⁴⁾.

22) 조은희·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p. 29.

23) 이에 대하여 일부이기는 하나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한 판결도 있다(서울민사지법 1988. 6. 9. 선고 87가합3317 제13부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24)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대법원 198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대법원 1995.2.3. 선고 94다42778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㉔ 공유재산설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단순히 명의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 등이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특유재산이 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공유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다²⁵⁾. 다수설이 취하는 견해이다.

즉 남편이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수입이라 할지라도 부인이 남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전업주부로서 단순히 가사노동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도 남편의 명의로 얻는 수입은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같은 법 제830조 제2항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보아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해석한다. 즉 민법 제830조 제2항의 공유재산의 의미를 확장하여 혼인일로부터 혼인이 해소된 날까지 사이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은 그 명의를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

나) 이혼시의 재산관계

(1)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혼이나 혼인취소의 경우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

25) 김주수, 『주석민법[친족(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p. 519;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 p. 151; 김병대, 「부부재산제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232호, 1980, p. 29; 李和淑, 夫婦의 財産關係에 관한 比較法的研究(1988) 博士學位論文, p. 185; 조미경,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가사노동」, 『관례월보』 240호(1986), pp. 37~38;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pp. 136~137; 박종용,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천법학논집』 제4집, 2001, pp. 317~318.

26) 조미경, 위의 논문, pp. 38~39.

하여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갖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부른다.

부부가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되면 부부공동생활체는 해체된다. 이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체에 속한 재산의 청산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청산방법이 재산분할제도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을 둘러싸고 청산설, 부양설, 청산 및 부양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통설인 청산 및 부양설²⁷⁾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기의 몫을 되찾아가는 받는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생활이 곤궁하게 될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이라는 부양적 요소가 복합된 것이다.

판례는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청산 및 부양적 요소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⁸⁾.

(2) 재산분할의 대상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즉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이나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재산은 그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이 되어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의 어느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 수

27)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 p. 225;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p. 158;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2005, p. 130.

28)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익 등과 같은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²⁹⁾.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하고 있는 연금·퇴직금·상여금 등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³⁰⁾.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수급권의 취득, 영업상의 신용의 형성, 의사·변호사·교수 등의 자격취득에 대한 협력이나 공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³¹⁾, 판례는 청산적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³²⁾.

(3) 재산분할의 기준 및 방법

(가) 재산분할의 기준

재산분할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비율을 고려하여 청산하자는 견해(기여도설)와 기여도 인정의 어려움과 부부생활의 경제적 공동성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자는 견해(평등설)로 나누어진다. 유럽이나 영미국가에서는 혼인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반액분할의 원칙(half and half division rule)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의 여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그

2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30)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31)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 p. 232; 김용한, 위의 책, pp. 160~161; 한봉희, 위의 책, pp. 132~133.

3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대법원 1998.6.12. 선고 98므213 판결.

액수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할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다(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판결에서의 재산분할의 실태를 살펴보면, 분할대상이 된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고 아내가 가사노동과 그 외의 노동으로 특유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경우에는 아내의 기여도를 3분의 1 미만으로 평가한다.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아내가 주부로서 가사노동에만 전념하거나 어느 정도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기여도를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평가하고, 여성이 가사노동보다는 사회적 노동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 및 가사노동을 하면서 부업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2분의 1로 평가하고 있다. 분할대상이 된 공동재산이 여성의 특유재산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인 경우에만 여성의 기여도를 2분의 1을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³³⁾.

(나)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따라서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을 명할 수도 있고, 분할대상 재산 전체를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소유로 하는 대신에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 대상분할은 채무부담에 의한 분할이라

33) 전경근, 「부부재산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부재산제·법원선주의』 공청회 자료,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2005. 1. 14, pp. 34~35.

고도 하며 실무상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4) 재산분할청구권과 증여세

헌법재판소는 이혼한 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 중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³⁴⁾.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혼한 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소득세 과세단위와의 관계

현행 민법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그 재산관계는 제830조부터 제833조까지의 법정재산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29조 제1항). 즉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부간의 재산관계가 정하여지지만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재산제인 별산제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민법상의 부부재산제가 소득세의 과세단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혼인 중에 부부가 번 소득에 대하여 누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가 하는 문제는 소득의 인적 귀속에 관한 문제이지만 소득세의 과세단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공유재산제를 체결한 경우에 그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제에 관한 계약이 소

34)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판결.

득세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개인단위주의를 변경시키는 효과를 갖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서 현행의 부부별산제 아래에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번 소득은 그 소득을 번 배우자만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는가 또는 부부 공동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는가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다.

이하에서는 부부공유재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부부공유재산제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부간의 재산관계가 정하여진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체결하는 약정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혼인당사자의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임과 동시에 장래 발생될 혼인을 전제로 한 혼인에 부종된 신분계약이다.

부부재산계약에서는 주로 부부재산의 소유관계·관리 및 처분관계·채무의 부담 내지 책임관계·청산관계 등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의 유형 중 비선택적 부부재산계약제를 채택하여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전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놓고 있다.

그런데 개인단위주의 아래에서 부부가 부부공유재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 등기한 경우에 그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개인단위주의가 영향을 받는지가 문제이다.

부부가 혼인 전에 부부공유재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남편은 사업의 영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가득 등과 같은 소득활동을 하고 부인은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남편이 소득활동에 참가하여 얻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은 오로지 가득자인 남편만의 소득으로 볼 것인

지 또는 남편과 부인의 공동소득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는 남편이 소득활동에 참가하여 가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오로지 그 소득의 가득자인 남편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남편의 과세소득에 그 전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것인지 또는 부부의 공동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의 2분의 1씩을 부부 각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만일 부부의 공동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의 2분의 1씩을 부부 각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인단위주의를 2분2승제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가득자소득설

부부가 혼인 전에 부부공유재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중의 일방이 가득한 소득은 그 가득자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미국의 Lucas vs. Earl 사건에 대한 판결과 일본의 最高裁 平成3年12月3日 判決이 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득자소득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남편 및 처의 합의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계약의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소득이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 등에 근거한 근로소득이라면 그 근로계약 등의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소득의 귀속관계가 결정된다고 한다. 근로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인 부부의 어느 한쪽일 뿐이고 부부 쌍방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로의 대가인 급료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도 근로자인 부부의 한쪽이지 부부의 쌍방이 아니며, 부부간에 있어서 부부의 쌍방이 위의 급료 등을 받는 권리를 얻는 것으

로 합의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그 합의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급료 등을 받을 권리를 부부 쌍방의 공유로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상대인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소득이 소득세법상 누구의 소득에 속하는가는 이와 같이 당해 수입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단계에 있어서 그 권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남편 또는 처의 어느 한쪽이 얻는 소득 그 자체를 원시적으로 남편 및 처의 共有로 하는 부부간의 합의는 그 의도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소득의 형성과정에 관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소득세법상의 소득귀속이 결정된다는 견해이다. 부부공유재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득활동을 영위하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을 가득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단독권리자(Alleinberechtigten)로서 소득을 얻는 것이며, 이어서 그 가득된 소득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이행한다고 한다³⁵⁾.

셋째, 민법상의 부부재산제와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배우자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규율은 조세채권 채무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넷째, 귀속에 있어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에 있어서 실질의 개념을 법적 실질의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법적으로 당해 소득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가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새긴다³⁶⁾.

35) Klaus Tiedtke, Grundstückerwerb von Ehegatten in Gütergemeinschaft, FamRZ 1979, S. 371.

36) 山田二郎, 『實務 租稅法講義-憲法と租稅法-』, 民事法研究會, 2005, pp. 409~410; 岩崎政明, 『ハイポセテイカル・スタデイ租稅法』, 弘文堂, 2004, p. 28.

(2) 공동소득설

부부가 혼인 전에 부부공유재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비록 배우자의 일방의 소득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 또는 처의 어느 한쪽이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원시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그대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새겨야 한다. 더욱이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등기가 이행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부부재산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형성된 소득의 부부간에 있어서의 귀속지분에 관계되는 법률관계에 터잡아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귀속도 결정함이 마땅하다.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부부공유재산제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재산이 부부 중 1인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 때에 관념적으로 그 부부가 당해 재산에 대한 각각의 약정지분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새겨야 한다. 한쪽 배우자에 의하여 가득한 소득은 당해 소득이 공동재산으로 되는 한 취득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되고, 따라서 어느 한순간도 그 가득한 배우자에게만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³⁷⁾.

부부공유재산제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배우자에 의하여 가

37) Edgar Lenski, Vertragsgestaltungen zwischen Ehegatten und ihre steuerrechtlichen Auswirkungen bei der getrennte Veranlagung, BB 1957, S. 1240; J. Heizer, Getrennte Veranlagung von Ehegatten bei allgemeiner Gütergemeinschaft nach Betriebsprüfung, FR, 1957, S. 440; Franz Zitzlaff, Allgemeine Gütergemeinschaft und getrennte Veranlagung, DB 1958, S. 233; Schott, Anmerkung zur Oberfinanzdirektion Münster-Verfügung vom 31.12.1957, BB 1958, S. 149; Walter Ermann/ Dieter Heckelmann, Hand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6. Aufl., Münster 1975, § 1416 Rz 5

득된 소득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한 배우자에 의하여
가득된 소득은 원초부터 각 배우자에 의하여 반액씩 가득된 것으로 보
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Poe v. Seaborn 사건에서 부부공유재산
제를 채택하고 있는 州에서의 부부 중 일방이 가득한 근로소득은 그
전액을 근로제공자, 즉 가득자만의 소득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각
배우자가 그 반액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부부
공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州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번 소득은 결
코 가득자만의 소득이 아니고 부부공동체의 소득에 속한다고 하는 법
리에 터잡고 있다. 위의 법리는 부부공유재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
재산계약을 체결한 부부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즉 부
부가 혼인 전에 부부공유재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계약을 체
결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비록 배우자의 일방의 소득활동을 수행함으
로써 얻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
이다.

넷째,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에 있
어서 실질의 개념을 경제적 실질의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부부 중 어
느 한쪽의 소득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모두의
공동소득으로 새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3) 결어

혼인 전에 부부공유재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
여 등기한 부부 중의 어느 한쪽만이 소득활동에 참가하여 소득을 가득
한 경우에 당해 소득은 가득자만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가득자소득설
이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³⁸⁾.

38) 金子宏, 「租税法と私法-借用概念及び租税回避について」, 『租税法研
究』6號, 1953, p. 20; 碓井光明, 「租税法における課税物件の歸屬につ

그렇지만 부부공유재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부부에 있어서 비록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소득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또한 상당한 논리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론적으로 볼 때 부부단위합산균등분할주의(2분2승제)를 도입할 때에는 위와 같은 다툼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³⁹⁾.

나) 법정재산제가 적용되는 경우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재산의 귀속은 명실공히 부부 각각의 소유에 속하는 것(각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고유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등),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것(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 및 가구 등)과 명의는 부부의 일방에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공유에 속하는 것(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 공동생활의 기금이 되는 예금·주권 등)의 3종류가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현행법의 해석상 경제거래의 형식적 확실성에서 비추어 볼 때 대외적으로는 그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지만 그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하고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혼할 때에는 당연히 청산의 대상이 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으로부터 공제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⁴⁰⁾.

특히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단순히 명의만

いて(Ⅱ)』, 『稅經通信』 27卷 2號, 1972, p. 49; 岩崎政明, 앞의 책, p. 30.

39) 김완석,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p. 182.

40) 我妻榮, 『親族法』(法律學全集), 1961, p. 102.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49

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 등이 자신의 수중에서 나간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도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특유재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견해⁴¹⁾를 취하게 되면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

그리고 근래에 이와 같은 견해를 일층 발전시켜 처가 남편의 소득활동에 협력한 경우 그 남편의 소득활동에 의하여 가득한 소득 또는 그 소득으로써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는 견해와 나아가서는 처의 가사노동을 남편의 소득활동과 마찬가지로 평가하여 남편의 소득활동에 의하여 가득한 소득 및 그 소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득활동의 성과로서 대내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는 견해(소득공유론)가 주장되고 있다⁴²⁾. 이와 같은 견해에 서는 경우에는 개인단위주의보다는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가 보다 적합한 면이 없지 않다.

나아가서 부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체를 조합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하고 부부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부부의 쌍방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태에 합치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소득세 과세단위로서의 개인단위주의가 민법상의 법정재산제와 체계 일관성이나 조화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부부단위합산균등분할주의, 즉 2분2승제가 현행 민법상의 법정재산제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⁴³⁾.

41) 我妻榮, 위의 책, p. 103; 김주수, 『주석민법친족(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p. 518.

42) 有地亨, 『註釋民法』 20卷(親族(1)), 1966, 第762條, p. 407; 吉良實, 「民法上の夫婦財産制・特別寄與分制と税法上の問題點」, 『稅法學』 356號, 稅法研究所, 1980, pp. 15~18.

독일은 민법상의 법정재산제인 잉여공동제(Zugewinnngemeinschaft)⁴⁴⁾를 실시한다고 하여 반드시 2분2승제가 강제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지만 2분2승제가 민법상의 법정재산제인 잉여공동제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같은 맥락에선 주장이라고 하겠다⁴⁵⁾.

나. 주요 국가의 과세단위의 재산법적 검토

1) 미국

가) 부부재산제의 개요

미국의 부부재산제도는 州에 따라서 부부별산제 또는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의한 통일적인 부부재산제도를 두지 않고 각 주의 자주적 규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앵글로색슨계의 보통법(common law) 체계를 따르는 州에서는 부부별산제(separate property)를 채택하고 있고, 민법(civil law) 체계를 도입한 라틴계의 8개 州⁴⁶⁾에서는 부부공유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는 州와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州의 근본적인 차이는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는 州에서는 결혼에 의하여 결합된 부부를 공동체(partnership)로 보지만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는

43) 김완석·이전오, 「여성의 결혼·이혼·상속과 세제」, 『여성관련세제의 개편방안』, 여성부, 2004, p. 17; 김정식, 앞의 논문, p. 231; 吉良實, 위의 논문, pp. 15~18.

44) 독일의 잉여공동제는 혼인기간 중에는 부부재산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별산제의 형태로 운용하나 이혼 시에는 잉여청산하는 제도이다.

45) Klaus Tipke/Joachim Lang, Steuerrecht, 17. Aufl., Verlag Dr. Otto Schmidt, 2002, S. 431.

46) Arizona, California, Idaho, Louisiana, Nevada, New Mexico, Texas, Washington州가 이에 해당한다.

州에서는 부부를 공동체로 보지 않는 데에 있다⁴⁷⁾.

(1)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는 영국의 전통적인 보통법상의 부부재산제도를 이어받아 수정·발전시킨 것으로 결혼기간 중에는 부부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다. 현재 대다수의 州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州라고 하더라도 부부별산제의 내용은 각 州마다 틀린다.

다음으로 이혼시의 재산분할방법은 배우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전재산분할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과 혼인재산(marital property)으로 나눈 다음 혼인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허용하는 이중재산분할제, 원칙적으로 혼인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나 불공정한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혼합재산분할제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는 이중재산분할제를 채택하고 있다⁴⁸⁾.

통일결혼및이혼법(Uniform Marriage and Divorce Act)은 특유재산과 혼인재산으로 나누지 않고 판사가 결혼기간, 前婚의 유무, 결혼 이전의 당사자간의 계약, 나이, 건강상태, 직업, 수입정도, 전문적인 기술 또는 자격의 소지 여부, 이전의 결혼력, 현재의 근무 여부 및 상태, 각 재산의 취득·보유·가치보존에 있어서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형평법에 의하여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7) 박홍래, 『미국 재산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04, pp. 307~308.

48) Emily Osborn, Comment, The Treatment of Unearned Separate Property at Divorce in Common Law Property jurisdiction, 1990, Wis. L. Review, 1990, pp. 918~939.

(2) 부부공유재산제

부부공유재산제는 유럽의 민법(civil law)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법제와 관련이 있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미국의 고유한 법제도로써 정착하게 되었다. 부부공유재산제는 현재 애리조나주를 비롯한 8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위스콘신주는 부부공유재산제에 근거하고 있는 통일부부재산법(Uniform Marital Property Act)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공유재산제에 가깝다⁴⁹⁾.

부부공유재산제 아래에서는 부부 각자가 소유하는 특유재산과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재산으로 구별한다. 각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과 혼인 후에 증여·유증 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인데, 각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특유재산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임대료·이자·배당금 등)은 州에 따라서 공유재산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또는 특유재산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결혼기간 동안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는데⁵⁰⁾, 각 배우자는 결혼기간 중 공유재산의 소유·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각 배우자는 공유재산 중 그 2분의 1에 상당하는 재산과 그의 특유재산을 유언에 의하여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이혼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때에는 동등한 분할(equal division)을 하는 주⁵¹⁾와 공평한 분할을 하는 州⁵²⁾로 나누어진다.

49) 각 배우자가 부부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그 권리는 권원의 등록명의자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부부재산법은 결혼기간 동안의 부부재산의 소유방법은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와 같으나, 그 권한의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와 비슷하다.

50) Paige Stevenson, Is the use of indirect Tracing A valid Method with which to meet the burden of proof that property Acquired During Marriage is Separate property?, 29 Idaho L. Review, 1993, p. 1027.

나) 부부재산제와 소득세 과세단위와의 관계

1) 1913년에 항구적 세제로서 소득세가 도입된 이래 각 주의 부부재산제와는 관계없이 개인단위주의를 적용되었다. 즉 기혼부부에 대하여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개인에 대하여 기혼자·미혼자·이혼자·과부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득세 과세단위로서의 개인단위주의가 각 주의 부부재산제와 충돌이 표면화된 것은 1930년 3월 17일 Lucas v. Earl 사건 및 1930년 11월 24일 Poe v. Seaborn 사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연방대법원은 Lucas v. Earl 사건⁵³⁾에서 부부간의 소득분할계약에 의하여 소득을 분할하고 부부가 그 분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 소득분할계약에 따른 소득분할 신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납세의무자인 Earl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변호사로서 1901년 그의 처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재산은 합유재산(joint tenants)으로 수취·보유·소유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 계약을 체결하였다. Earl은 1920년과 1921년에 받은 급여와 그가 벌어들인 변호사 수입에 대하여 위의 부부간의 소득분할계약을 근거로 하여 그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자신의 소득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처의 소득으로 하여 각각 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소득분할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Earl에게 Earl이 1920년과 1921년에 받은 급여와 그가 벌어들인 변호사 수입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Earl은 소득분할계약은 캘리포니아주法上 유효할 뿐만 아니라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

51) California, Louisiana, New Mexico州가 이에 속한다.

52) Arizona, Idaho, Nevada, Texas, Washington州가 이에 해당한다.

53) 281 U.S. 538(1930).

기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의 Hormes 판사는 부부간의 재산계약이 유효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나무의 열매를 그 열매가 달린 나무에서 다른 나무의 것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는 나무와 열매에 관한 이론을 동원하여 부부간의 소득분할신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3) 부부공유재산제를 시행하고 있던 워싱턴주의 거주자이면서 시민권자인 Seaborn과 그의 처는 1927년의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Seaborn의 급여·이자·배당금·부동산 및 동산의 처분이익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위의 소득의 전액이 남편인 Seaborn의 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Seaborn에게 그 전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Seaborn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의 Roberts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소득의 2분의 1씩을 각각의 소득으로 하여 개별적인 소득세신고를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와 같은 *Poe v. Seaborn* 사건⁵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후에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州에서는 부부가 가득한 소득이 부부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총액을 둘로 나누어 소득세를 과세하였지만,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州에서는 그 소득을 가득한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당해 배우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였다⁵⁵⁾. 이 때문에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던 서부와 중서부의 몇 개 州는 기혼부부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부공유재산제로 전환하였으며⁵⁶⁾, 뉴욕을 비롯한 동부의 일부 州에서도 이와 유사한 음

54) 282 U.S. 101(1930).

55) Boris I. Bittker, *ibid.*, p. 111~52.

56) Michigan, Nebraska,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州는 1948년 기혼부부에 대하여 2분2승제를 허용하도록 내국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부부공유재산제를 무효화하였다(Peter Severeid, *Increase in Value of Separate Property in Pennsylvania: A Change in What Women went ?*, 68 *Temp. Law Review*, 1995, p. 558; Ronald R. Volkmer, *Spousal Property*

직임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부부재산제의 차이에 따른 각 주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1948년에 선택적인 2분2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즉 2분2승제(Joint Return System)는 연방 대법원의 Lucas v. Earl 사건과 Poe v. Seaborn 사건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빚어진 지역적 차별⁵⁷⁾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하겠다⁵⁸⁾. 이와 같은 2분2승제는 기혼부부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각각 별도로 신고하거나, 2분2승제에 의하여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4) 단일세율표 아래에서의 2분2승제는 독신자에 비하여 기혼자, 특히 혼자 버는 부부를 우대한다는 점과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독신세대주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⁵⁹⁾. 이에 따라 1951년에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를 위한 세율표를 제정하였는데, 이 세율표는 독신세대주의 소득세 부담을 독신자와 공동신고부부의 중간 정도에 맞춘 것이었다⁶⁰⁾.

1969년에 내국세법을 개정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분리신고하는 기혼자(Married filing separately), 공동신고하는 기혼자(Married filing jointly), 독신자(Single) 및 독신세대주(Head of

Rights at Death: Re-evaluation of the common law premises in light of the proposed Uniform Marital Property Act, 17 Creighton Law Review, 1984, p. 151).

57) 부부재산제에 있어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부부와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부부간의 세부담의 차이를 말한다.

58) Schmalbeck, Richard & Laerence Zelenak, Federal Income Taxation, Aspen Publishers, 2004, p. 778.

59) Boris I. Bittker, op. cit., pp. 371~375.

60) 下院은 모든 家長(head of family)에게 완전한 2분2승의 이익을 부여하도록 제안하였으나, 上院의 재정위원회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그 대신 독신세대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더욱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과부 또는 홀아비(surviving spouse)에게 배우자와 사별 후 2년간은 완전한 2분2승제의 이익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였다.

household)의 4종류로 세분하였다(내국세법⁶¹⁾ 제1조). 위의 입법으로도 미혼독신자와 공동신고하는 기혼부부간의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을 제거하지는 못하였으며, 공동신고하는 기혼부부에 있어서도 결혼혜택(marriage bonuses)을 누리는 자와 결혼징벌(marriage penalty)을 받는 자가 혼재하고 있었다⁶²⁾.

5)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수세율표 아래에서의 기혼부부의 공동신고는 기혼부부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세징벌을 부담시키기도 한다. 위와 같은 두 행태는 모두 누진세율구조의 기능에서 비롯되고 있다.

조세법은 가능한 한 혼인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엄격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혼혜택이든 결혼징벌이든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러나 조세법이 누진세율구조를 유지하면서 맞벌이부부이든 한쪽벌이부부이든 총소득이 같은 부부는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조세중립성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태생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2001년 개정법률안(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은 공동

61)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IRC).

62) 기혼부부의 소득세가 독신자의 소득세보다 증가하는 결혼징벌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연방제2항소법원은 이와 같은 결혼징벌을 야기하는 당시의 연방 내국세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연방제2항소법원은 기혼부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방 내국세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납세의무자의 주장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유보한 채 기혼부부의 소득세부담의 증가가 결혼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항상 독신자징벌이나 결혼징벌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기혼부부나 미혼독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표상의 과세구간을 줄이고 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문제로 보았다(Drucker v. Comr., 697 F.2d 46).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57

신고하는 기혼부부의 표준공제와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미혼독신자의 표준공제액의 167% 수준인 기혼부부의 표준공제액을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200%가 되도록 개정하였다⁶³⁾. 그리고 미혼독신자의 과세구간(bracket)의 167% 수준인 기혼부부의 합산과세시의 15% 세율의 과세구간의 폭을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그 폭을 확대하여 2008년에는 200% 수준으로 넓히도록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2005년 11월 1일 대통령 직속 조세개혁 자문단(panel)은 결혼에 불리한 요소(marriage penalties)를 축소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부부에 대한 세율구간, 가족세액공제(Family Credit)⁶⁴⁾, 사회보장급여 과세에 있어서의 공제액(면세점)을 독신자의 두 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⁶⁵⁾.

2) 독일

가) 부부재산제의 개요

독일은 1900년 이전에는 각 지역마다 200여개의 다양한 부부재산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통합할 필요성에 따라 여러 유형의 부부재산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법정재산제로서 관리용익제(Güterstand der Nutzverwaltung)를 채택하여 남편에게 처의 재산에 대한 사용용익권과 관리권을 주었다. 그러나 관리용익제는 기본법

63) 2005년에 미혼독신자의 174% 수준인 기혼부부의 표준공제를 2006년 184%, 2007년 190%, 2008년 200%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64) 종래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표준공제(standard exemption),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가족세액공제(family credit)로 통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65) Heidi Glenn, "Tax Panel's Report Kick Off Tax Reform Debate," *Tax Notes*, Volume 109, Number 6(2005. 11. 7), p. 704.

(Grundgesetz) 제3조 제2항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53년에 법정재산제로서 별산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57년에는 男女同權法(Gleichberechtigungsgesetz)을 제정하면서 법정재산제로서 잉여공동제를 도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부부재산제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부부재산제는 부부간에 부부재산계약이 있으면 그 부부재산계약에 따르고,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법정재산제인 잉여공동제가 적용된다.

(1) 부부재산계약제

독일의 부부재산계약제는 선택적 재산계약제에 속한다. 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별산제(Gütertrennung)와 부부공유재산제(Güergemeinschaft)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별산제와 부부공유재산제의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은 물론이고 혼인 후에도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변경할 수도 있다(독일 민법⁶⁶⁾ 제1408조).

부부재산계약제인 부부별산제는 혼인기간 중이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도 서로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재산상의 별산제도이다. 즉 부부별산제는 부부가 서로 배타적으로 자기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관리 및 수익권·처분권을 갖는 재산제이다.

다음으로 부부공유재산제는 부부가 각각 관리할 수 있는 유보재산(Vorbehaltsgut)과 특유재산(Sondergut)을 제외한 부부의 모든 재산을 합유재산(Gesamtgut)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혼인기간 중의 부부의 재산관계는 공동소유이나 이혼 후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

66) 독일 민법: Bürgerliches Gesetzbuch(BGB).

할이 결정되는 재산제도이다.

(2) 법정재산제

부부재산계약제를 선택하지 않은 부부에게는 법정재산제인 잉여공동제(Zugewinnngemeinschaft)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부부가 법정재산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법정재산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⁶⁷⁾. 잉여공동제는 혼인기간 중에는 부부재산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별산제의 형태로 운용하나 이혼 시에는 잉여청산하는 제도인데, 부부별산제와 부부공유재산제의 장점을 절충하여 만들어 낸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각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전재산을 각각 독자적으로 관리·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혼인을 통하여 배우자간의 소유권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독일 민법 제1363조). 그러나 자신의 전체 재산(ganzen Vermögen)이나 가재도구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독일 민법 제1365조, 제1369조). 이와 같이 일정한 재산의 처분에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은 가족경제의 위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시의 잉여청산에 있어서 입게 될 청산재산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⁶⁸⁾ 부부간에 각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혼·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는 각 배우자는 잉여청산청구권을 갖는다. 잉여청산청구액은

67) 독일에서 91.7%의 부부는 부부재산계약제를 선택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한다(Harald Langels, Familienrecht, 3. Aufl., 1999, S. 41).

68) Günter Beitzke, Familienrecht 22 Aufl., C.H. Beck, 1981, S. 96.

배우자의 당초재산과 중국재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방식을 거쳐서 산정된다(독일 민법 제1373조).

첫째, 각 배우자의 중국재산에서 당초재산을 공제하여 각 배우자의 잉여액을 산정한다.

둘째, 잉여액이 많은 배우자의 잉여액에서 잉여액이 적은 배우자의 잉여액을 공제한다.

셋째, 잉여액의 차액을 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잉여청산청구액이 된다.

〈사례〉 남편의 당초재산은 20,000유로이고 처의 당초재산은 10,000유로이다. 그리고 남편의 중국재산은 100,000유로이며, 처의 중국재산은 60,000유로이다. 위의 자료에 의하여 청산청구액을 산정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단계로서 각 배우자의 잉여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아래 〈표 II-1〉에서와 같이 남편의 잉여는 80,000유로, 처의 잉여는 50,000유로로 산정된다.

〈표 II-1〉 배우자간 잉여액의 산정

(단위: 유로)

구 분	남 편	처
중국재산	100,000	60,000
당초재산	20,000	10,000
잉 여	80,000	50,000

둘째 단계로서 잉여액이 많은 남편의 잉여액(80,000유로)에서 잉여액이 적은 처의 잉여액(50,000유로)을 공제하여 잉여액의 차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잉여액의 차액은 30,000유로이다.

셋째 단계로서 잉여액의 차액을 2로 나누면 15,000유로가 된다. 따

라서 처의 청산청구액은 15,000유로이다.

어떤 배우자의 잉여액이 다른 배우자의 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잉여액의 차액의 절반은 다른 배우자에게 분할된다(독일 민법 제 1378조). 잉여청산의 액수는 부부재산제의 종결시 채무를 공제한 후 현존하는 재산의 가치로 한정된다.

잉여공동제는 결과적으로 공동으로 협력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혼인기간 중 창출된 각 배우자의 재산은 법원의 재량권이 배재된 도식적 청산방법에 의하여 청산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나) 부부재산제와 소득세 과세단위와의 관계

1) 독일은 1920년 연방소득세법을 제정한 이래 부부의 소득에 미성년인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가족단위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런데 연방헌법재판소는 1957년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1964년 자녀의 가족단위합산비분할주의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하였다.

2) 연방헌법재판소는 1957년 1월 17일 부부합산과세를 정한 1951년 소득세법 제26조가 기본법 제6조 제1항(혼인 및 가족의 보호)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⁶⁹⁾.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입법자는 基本法 제3조 제1항에 터잡고 있는 조세평등의 원칙(Grundsatz der Steuergerechtigkeit)에 구속된다. 그리고 입법자는 법질서와 사회질서의 특정 영역에 있어서 헌법제정자의 가치결정이 표현된 原則規範(Grundsatznorm)에도 구속된다. 어떤 법규정이 그 원칙규범에 적합한가에 관한 심사가 가능한 경우에

69) 1957. 1. 17., BVerfGE Bd., 6. S. 55.

는 일반적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그에 터잡고 있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심사할 여지는 없다. 기본법 제6조 제1항은 나치정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에 의한 외부적 강제에서 혼인과 가족이라는 특정한 私的 領域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보장으로서 혼인법과 가족법 규범의 핵심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② 기본법 제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의 전부의 영역에 관련된 私法 및 公法에 대한 구속적인 가치결정인 원칙규범이다. 제6조 제1항을 원칙규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지도원리와 헌법의 기본권부분에 규정된 제6조 제1항의 위치관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제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는 국가가 다른 권력의 침해로부터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 또는 국가가 혼인과 가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촉진한다는 것과 소극적으로는 국가 자체가 혼인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제6조 제1항이 전자에 관하여 어느 정도 명령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후자에 관하여 명령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 ③ 소득세의 부부합산과세는 개인과세의 원칙을 파괴하고 기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혼인을 방해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또 조세법규에 있어서 과세단위를 혼인과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이나 일정한 사회법의 영역에 관한 것과는 달라서 事物의 本性에 위반된다.

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전형적인 기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특정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가 오로지 가사에 종사할 것인지 남편의 일을 도울 것인지 또는 독립된 경제활동으로부터 수입을 얻을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부부의 사적 결정의 자유에 속한다. 입법자는 혼인이라는 사적 영역의 특정한 형성을 직접 강요할

수는 없다. 부부합산과세는 그와 같은 강요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강요와 다를 바 없는 목적에 봉사하는 조치를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소득세법 제26조는 기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서는 혼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부 또는 가족은 다른 공동체보다 납세상 편리하다든가 합산과세는 부부 사이의 재산의 분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행정기술적 평가는 위헌의 판단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소득세법 제26조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연방의회는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를 폐지하고 부부단위합산균등분할주의, 즉 2분2승제(Splittingverfahren)를 도입하였다.⁷⁰⁾ 다만 부부에게 개인단위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부여하였다.

3)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위헌판결에 이어서 1964년에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얻는 소득을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1951년 및 1953년 소득세법 제27조의 자녀합산과세(Zusammenveranlagung mit Kindern)에 관한 규정이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선언하였다⁷¹⁾. 연방의회는 1964년 11월 개정법에서 자녀의 소득에 관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1965년 12월에는 문제가 된 소득세법 제27조를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이센 이래 계속 유지되어 왔던 세대합산과세제도는 법률상 사라지게 되었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합산분할과세(2분2승제)와 개인단위주의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따르도록 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즉 부부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산분할과세(zusammen Veranlagung)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분리과세(getrennte Veranlagung)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⁷²⁾.

70) StÄndG vom 18.7.1958.

71) 1964. 6. 30., BVerfGE Bd.. 18. S. 97.

72) Schmidt, Ludwig, Einkommensteuergesetz Kommentar, 20. Aufl.,

부부의 소득에 대하여 합산분할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누진효과가 크게 완화된다. 부부에 대한 합산분할과세의 절세효과는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소득이 있을 때 가장 크며, 두 배우자의 소득이 서로 비슷할수록 작아져서 두 배우자의 소득이 같을 때에는 영(0)이 된다.

합산분할과세방식에 대하여 고소득자에게 조세경감의 혜택이 클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득을 얻는 독신자에 비하여 기혼부부를 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조세개혁위원회(Steuerreformkommission)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세 경감액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향하는 누진세율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⁷³⁾.

합산분할과세방식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부는 근로 및 소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아울러 부부는 수입을 반액씩 누림과 동시에 지출 및 부담도 각각 반액씩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세대의 실태에 맞는다. 그리고 합산분할과세방식은 처의 입장을 특히 존중하여 남편의 직업에 대한 처의 조력을 세법상 인정하여 준 것으로서 민법상의 법정재산제인 잉여공동제(Zugewinnngemeinschaft)와도 부합한다⁷⁴⁾.

연방헌법재판소는 1982년 11월 3일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이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합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⁷⁵⁾.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부의 합산분할과세방식은 입법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르면 처의 가정부와 어머니라고 하는 지위를 특별히 승인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가사노동이나 직업활동의 어디에서나 남성과 여성의 노동을 동

Verlag C.H.Beck, 2001, SS. 1916~1917.

73) Gutachten der Steuerreformkommission, Bonn, 1971, S. 194.

74) Tipke, Klaus/Joachim Lang, Steuerrecht, Ein systematischer Grundriß, 13. Aufl., Verlag Dr. Otto Schmidt KG, 1991, S. 396.

75) 1982. 11. 3., BVerfGE Bd. 61, S. 346f.

등하게 평가한다. 부부의 합산분할과세방식의 목적은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합치한다. 따라서 부부의 합산분할과세방식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세적 우대조치가 아니고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보호의무와 부부의 경제적 담세력에 적합한 과세"라고 판시하여 당해 제도의 합헌성을 확인한 바 있다.

3) 일본

가) 부부재산제의 개요

일본은 부부재산계약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법정재산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민법은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1) 부부재산계약제

부부는 혼인의 성립 전에 그 재산관계에 관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일본 민법 제755조). 계약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⁷⁶⁾. 그 형식 내지 체결방식은 매우 엄격한데,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한번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부부재산계약제는 그 활용이 극히 미미하여 그 이용실적은 1년에 2~3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⁷⁷⁾.

76) 板橋郁夫·松永靜雄, 『親族法·相續法講義』, 成文堂, 1994, p. 69.

77) 板橋郁夫·松永靜雄, 위의 책, p. 69.

(2) 법정재산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는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되, 부부의 어느 쪽에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일본 민법 제762조).

위의 민법 제76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⁷⁸⁾.

가) 부부별산제로 이해하는 학설

나) 부부별산제로 이해하면서 처의 내조의 기여도를 부부상호간의 채권 또는 부당이득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학설

다) 처의 내조의 기여도를 재산귀속과 결부시켜 혼인 중 소득공유제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학설

처의 내조의 기여도를 재산귀속과 결부시켜 혼인 중 소득공유제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학설은 그 근거에 따라 다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민법 제762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그 취득에 있어서 다른 일방의 협력을 생각할 수 없는 재산만을 명실상부한 남편 또는 처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민법 제762조 제2항의 共有로 추정하여 명실상부한 공유재산과 명의를 부부 일방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나눈다⁷⁹⁾.

공유추정재산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여 부부간의 재산적 평등을 꾀하고 부부별산제를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일찍부터 通說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법 제762조는 부부재산의 귀속과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

78) 緒方直人, 『夫の所得と共有財産, 家族法判例百選(第4版)』, 有斐閣, 1988, p. 20; 青山道夫・有地亨, 『新版註釋民法(21)』, 有斐閣, 1989, p. 463.

79) 我妻榮, 『親族法』(法律學全集), 有斐閣, 1961, p. 102.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67

한 것이고 부부간의 혼인 중의 소득의 귀속은 제768조(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규정되므로 소득공동제에 가까운 복합형태의 재산제로 보고 있다⁸⁰⁾.

(2) 민법 제762조 제1항의 특유재산을 제외하고는 법정재산제로서 원칙적으로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하여 남편의 수입은 그 취득 당초부터 공유이어서 부부에게 평등하게 분할되는 재산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근래에는 혼인 중에 가득한 소득이 부부의 공유로 되는 근거를 처의 内助의 功을 평가한다고 하는 점에서 찾지 않고 부부가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혼인공동생활에 충당하여야 할 특별한 공동재산이라는 점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즉 혼인 파트너십(partnership)의 재산이라고 하는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⁸¹⁾.

나) 부부재산제와 소득세 과세단위와의 관계

1887년에 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호주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가족단위합산비분할주의를 채용하였다⁸²⁾. 가족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독일의 프로이센(Preußen) 소득세법을 모델로 하여 도입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의 민법상의 가족제도와 호흡이 잘 맞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1947년에 민법의 친족편이 전부 개정되어 종래의 가족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가족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다음으로 샤프사절단의 일본세제보고서(1949년)에서는 가족단위합

80) 青山道夫·有地亨, 위의 책, p. 466.

81) 島津一郎·久貴忠彦編, 『新·判例コンメンタル民法』(11), 親族(2), 三省堂, 1994, p. 72.

82) 所得稅法(明治20年勅令第2號) 第1條 第2項.

산비분할주의를 폐지하고 각 납세의무자가 독립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각자의 소득액에 대한 세액을 제각기 납부하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개인단위주의로 이행하였으며, 다만 자산소득에 대한 세대단위합산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⁸³⁾.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는 그 다음 해인 1951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폐지와 사무간소화를 내세워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1957년의 임시세제조사회는 그 答申에서 자산소득은 세대를 과세단위로 하여 합산하는 것이 자산 명의의 분할 등 표면상의 假裝에 의하여 부당하게 소득세가 경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답신에 근거하여 1957년부터 다시 개인단위주의의 특례로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즉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자산소득에 한하여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는 특례가 채택된 것이다.

그런데 위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대단위합산비분할주의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13조·제14조·제29조·제30조 및 제84조에 위반된다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최고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한 세대단위합산비분할주의에 관한 규정은 合憲이라고 판시하였다⁸⁴⁾.

그러나 일본은 1988년의 소득세법 개정에서 세액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순수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⁸⁵⁾.

83) 吉良實, 「課稅單位に關する一考察」, 『稅法學論文集』, 日本稅法學會, 1981, p. 437.

84) 最高裁 昭和 55. 11. 20., 昭和53(行ッ)第55號.

85) 金子宏, 『租稅法』, 第十三版, 弘文堂, 2008, p. 168.

4) 영국

가) 부부재산제의 개요

영국은 대륙법계 국가에서와 같은 부부재산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나 부부재산계약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영국은 판례법국가로서 특별히 어떤 제도를 바꿀 목적으로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한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Common Law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국이 판례법 국가라 하여 부부재산에 관한 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부재산제에 관한 법률로는 1870년의 기혼여성재산법(Married Women's Property Act), 1973년의 혼인사건법(The Matrimonial Cause Act), 1975년의 개정가족법(Family Law Reform Act), 1984년의 혼인 및 가사소송법(Matrimonial and Family Proceeding Act) 등과 같은 여성보호법의 성격을 지닌 법률을 들 수 있다.

1870년에 제정한 기혼여성재산법(Married Women's Property Act)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가 혼인 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도 각자의 수입과 그 수입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각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부부별산제를 공유제에 가깝게 해석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73년에 제정된 혼인사건법(The Matrimonial Cause Act)에서는 이혼 시 전업주부에게도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의 3분의 1 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1975년의 개정가족법(Family Law Reform Act)에서는 처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부부재산제와 관련한 영국법원의 판례는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명의상 그 일방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동등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시하여 왔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부부재산법은 대륙법계와는 달라서 부부재산계약제나 법정재산제를 채택하지 않고, 기혼여성재산법 및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제정법이나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구축된 원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영국의 부부재산제를 결정짓는 기준과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⁶⁾.

첫째, 영국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같은 부부재산계약제에 관한 관습이 없었고, 그 대신 혼인 전·후에 혼인계승적 승계처분(marriage settlement)을 약정하였다. 혼인계승적 승계처분에 관한 약정이란 처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과 보유·계약·소송 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처의 재산은 남편의 관리·지배 아래에 두는 약정이다.

둘째, 재산을 부부의 공동명의 또는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신탁(trust for sale)의 원리가 적용되거나 명의자에게 복귀신탁(resulting trust)한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 부부의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분배를 인정한다. 그리고 명시적 증서에서 공동명의를 사용하고 있거나 예금증서에 공동저축자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간에 동등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넷째, 혼인 중 공동의 기여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사업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동등하게 분배하는 이론이 형성되었다. 즉 배우자의 기여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의 다과를 따지지 아니하고 공동분배를 인정하는 판례가 확립되어 마치 대륙법계 국가의 공동재산제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부부재산제는 소득공동제와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혼인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임차권 등의 권리가 없는 배우

86) 조은희·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12, pp. 81~82.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71

자는 거주권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등기할 수 있고, 제3자의 권리로부터 보호된다.

나) 부부재산제와 소득세 과세단위와의 관계

근대적 소득세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은 1799년에 소득세제를 도입한 이래 일관하게 부부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하여 왔다. 즉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에 독신자와 동일한 세율표에 의하여 과세하는 합산비분할주의를 고수하여 왔다.

영국에서는 부인을 남편의 보호(coverture) 아래에 두면서 부인의 법적 존재를 부정하여 왔다. 즉 부인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과 보유·계약·소송 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의 재산은 남편의 관리·지배 아래에 두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부재산제는 소득세의 과세단위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⁸⁷⁾. 소득세 및 법인세법(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ICTA) 제37조에서는 “...처의 과세소득은 소득세의 목적상 남편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처의 소득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처의 소득을 남편의 소득에 합산하고 남편에게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부부단위합산방식은 영국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관습과 일치한다고 하겠다⁸⁸⁾.

1970년대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하고, 특히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혼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1972년부터 부인의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대하여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의 선택을 허용하였다.

87) Stephan Cretney, *Principle of Family Law*, Sweet & Maxwell, 1997, p. 102.

88) 小石侑子, 「イギリスにおける夫婦への課税-夫婦合算課税から個人単位課税へ-」, 『家族と税制, 弘文堂』, 1998, p. 72.

즉 1971년의 재정법(Finance Bill)에서 부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부부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남편의 소득으로부터 분리하여 과세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38조). 그러나 부인의 자산소득은 여전히 남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는데⁸⁹⁾, 부부간의 자산의 분산에 의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⁹⁰⁾.

그런데 1986년에 공표한 재무부의 개인과세의 개혁에 관한 그린 페이퍼(Green Paper : The Reform of Personal Taxation)가 발표되었는데, 이곳에서 부부는 과세상 평등하므로 부인의 소득을 남편의 소득으로 의제하는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자산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하고, 인적공제에 있어서도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하던 특별인적공제를 폐지하고 남편과 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초공제만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1988년의 재정법에 의하여 1990년 4월부터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하였다⁹¹⁾. 이에 따라 남편과 부인은 각각 별개의 주체(separate entity)로서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지게 되었다⁹²⁾.

89) 1990년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Maria Teresa & Soler Roch., *Family Taxation in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 131).

90) 小石侑子, 위의 논문, p. 74.

91) Whitehouse, C. & Stuart-Buttle, E., *Revenue Law-Principle and Practice*, 10th ed., Butterworths, 1992, p. 653.

92) 小石侑子, 위의 논문, pp. 77~78.

5) 프랑스

가) 부부재산제의 개요

프랑스의 부부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제에 의하되,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재산제인 소득공동제(communaut acquts)가 적용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실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부부는 전체 부부의 20%를 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80%에 상당하는 부부는 법정재산제인 소득공동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1) 부부재산계약제

프랑스의 부부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의 자유의 바탕 위에 구축되어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약정공동제·별산제 및 후득재산참가제를 예시하고 있다. 부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민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위의 부부재산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유형을 변경하여 전혀 다른 형태의 부부재산제를 채택할 수 있다.

먼저 부부는 민법 제1387조부터 제1389조에 위반되지 않는 합의로 법정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약정공동제라 하는데, 법정재산제의 수정유형을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재산에 동산과 결혼 후 취득재산이 포함된다는 것
- ② 공동재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 ③ 부부의 일방이 보상금 지급의 방식으로 일정한 재산을 선취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
- ④ 부부 일방이 선취금을 갖는다는 것
- ⑤ 부부가 불균등한 지분을 갖는다는 것
- ⑥ 부부 사이에 포괄적인 공동재산제를 실행한다는 것

이와 같은 법정재산제의 수정과는 별개로 별산제와 후득재산참가제

(잉여공동제)의 유형도 예시하고 있다.

별산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부 각자가 자신의 특유재산을 관리·사용·수익 및 처분할 수 있고,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생활비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분담하는데, 이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214조에 따른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배우자나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재산이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부부 각자가 그 2분의 1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

후득재산참가제(잉여공동제)는 혼인 중에는 별산제와 같이 부부 각자가 특유재산을 관리·사용·수익 및 처분하되, 혼인이 해소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재산과 구분되는 각자 명의의 순잉여재산의 차액에 대하여 2분의 1씩 분할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독일의 잉여공동제와 유사하나 다소 변형된 형태이다.

(2) 법정재산제

프랑스는 법정재산제로서 소득공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의 재산은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으로 구성된다. 부부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공동재산과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동제 아래에서의 부부는 별산제 아래에서의 부부만큼 재산관리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재산제인 소득공동제 아래에서의 부부의 재산은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재산은 적극적 공동재산과 소극적 공동재산으로 나누어진다. 적극적 공동재산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과 개인적인 경제활동이나 각자의 특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수익의 저축에 의하여 구성된 재산이다(프랑스 민법 제1401조). 그리고 동산이든 또는 부동산이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재산은 공동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75

재산으로 간주한다(프랑스 민법 제1402조 제1항).

다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생활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체결한 채무, 그 밖에 혼인기간 중 남편 또는 처가 부담할 채무는 소극적인 공동재산을 이룬다. 그러나 부부 각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보증이나 차용을 한 경우에는 그의 특유재산과 수입만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프랑스 민법 제1415조).

한편 프랑스에서는 혼인주택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즉 배우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서로 가족의 주거를 보호하는 권리 또는 주거에 설비된 가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프랑스 민법 제215조).

나) 부부재산제와 소득세 과세단위와의 관계

프랑스는 부양하는 자녀의 수에 따른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1945년 말에 家族係數制(systeme du quotient familial)라는 독특한 소득분할방식으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당해 제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가족계수제는 종래의 공제제도 대신에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른 家族係數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로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가족정책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채용되어 戰後의 프랑스의 인구증가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⁹³⁾.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세대별로 납세의무자의 가족상황 및 부양에 따른 일정한 數值(家族係數)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세대구성원에게 분할하는 세대단위합산분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소득에는 배우자의 소득 및 부양하는 자녀의 소득이 모두 합산된다. 부부의 소득은 예외없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혼소송 중이거나 법률상 별거 중으로서 따로 거소를 갖는 것이

93) 山田美枝子, 「家族の多樣化とフランス個人所得稅」, 『家族と稅制』, 弘文堂, 1998, p. 90.

허가된 경우,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일방이 가출하여 각자가 번 소득으로 각각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한다(조세일반법⁹⁴⁾ 제6조의4).

다음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녀, 즉 18세 미만의 자녀와 장애인인 자녀(연령에 관계없다)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므로 미성년인 자녀와 장애인인 자녀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조세일반법 제196조). 다만,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라 하더라도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소득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한 자녀는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족계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제외된다. 즉 부양하는 자녀 1인에 대하여 0.5단위 또는 1단위의 가족계수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에 대한 분리신고가 유리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므로 자녀의 소득에 대하여 부모의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신고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소득분할방식은 家族係數制라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족계수제는 가족의 총소득을 家族係數로 나누어 가족계수 1단위당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이어서 가족계수 1단위당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가족계수 1단위당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정한다⁹⁵⁾.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소득세 산출세액} = [(\text{세대단위 합산소득} / \text{가족계수}) \times \text{세율}] \times \text{가족계수}$$

가족계수는 독신자·이혼자·홀아비 및 과부는 1단위(part)이고

94) 조세일반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CGI)

95) 山田美枝子, 위의 논문, p. 94.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77

부부는 2단위이다. 그리고 부양하는 자녀는 첫째와 둘째는 각 0.5단위, 셋째 이하는 각 1단위이다. 당초에는 부양하는 자녀 1인에 대하여 균일하게 0.5 단위의 가족계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자녀 수의 증가에 따라서 소득세 부담의 감소액이 체감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첫째 및 둘째 자녀와 셋째 이하의 자녀 사이에 가족계수에 차등을 두게 된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홀아비이거나 과부인 경우로서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홀아비 또는 과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가족계수 2단위를 부여한다. 독신자 또는 이혼자에게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 최초의 자녀에게는 가족계수 1단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독신자 또는 이혼자에게 1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계수가 2단위가 되며, 2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계수가 2.5단위가 된다.

부부의 소득에 대하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가족계수제는 기혼자,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킨다. 소득세 부담의 감소 효과는 자녀의 수가 많고 가족 중 夫 또는 妻만이 소득을 얻는 경우에 가장 크다. 이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액경감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즉 독신자·이혼자·홀아비 및 과부의 경우에는 가족계수 1단위를 초과하여 향수할 수 있는 0.5단위마다, 그리고 기혼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계수 2단위를 초과하여 누릴 수 있는 0.5단위마다 일정한 부담경감한도액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가족계수제는 가족의 부양에 부응하여 누진소득세의 누진도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액소득자에게 보다 큰 소득세의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하여지고 있다.

3. 과세단위의 다른 조세제도와의 체계적 검토

가. 동업기업과세특례와의 관계 검토

1)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개요

① 합자회사·합명회사 및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한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그 합자회사 등이 사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이나 특별법상의 조합(예: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등은 독립된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취급하지 않고 도관(conduit)으로 본다. 따라서 민법상의 조합이나 특별법상의 조합 등이 번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출자지분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그 조합원에게 법인세(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또는 소득세(조합원이 개인인 경우)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partnership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합자회사·합명회사· 및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현행의 과세방식(합자회사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합자회사 등이 그 사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과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에 따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이나 특별법상의 조합 등에 대하여는 현행의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방식과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에 따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동업기업(2명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79

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동업기업과 세특례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법 제2장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조특법 100의15).

- (1) 민법에 따른 조합
-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 (4) 위의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에서는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과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과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을 열거하고 있다.

③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조특법 100의16).

④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조특법 100의21).

⑤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조특법 100의22).

⑥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조특법 100의23).

⑦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조특법 100의26).

2) 소득세 과세단위와의 관계

소득세의 세율구조가 초과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분산을 통한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함으로써 소득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현행과 같이 개인단위주의를 고수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자들은 부부간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적용을 통하여 소득세 부담의 경감을 추구할 수 있다. 즉 부부(혹은 가족)간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민법상의 조합 등

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음으로써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피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단독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부부(혹은 가족) 간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의 형태나 민법상의 조합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는 개인간에는 소득세 부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공동사업과세와의 관계 검토

1) 공동사업과세제도의 개요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소법 2 ①, 43 ②). 그러므로 위의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43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공유물 및 공동사업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즉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가 부담하는 그 거주자의 몫의 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동사업합산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⁹⁶⁾.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체, 즉 조합을 조합원의 소득도관(income conduit)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조합이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조합 자

96) 同旨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체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조합단위로 산정한 과세소득금액을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각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다시 부연한다면 공동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에 당해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그 공동사업자들은 각자에게 배분된 소득금액과 그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된다.

이 경우에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의 편의를 고려하여 조합을 소득금액의 계산단위로 한다. 즉 조합을 과세소득 산정의 주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단위로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조합(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의제한다(소법 43 ①).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법 43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이란 그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이미 현실적으로 분배(distribution)받은 소득금액은 물론이고 아직 분배받지 못하였으나 그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을 일컫는다. 배분(allocation)된 소득금액과 같은 의미이다. 배당소득과는 달라서 공동사업장 등에서의 각 조합원에 대한 소득금액의 현실적인 분배나 분배금의 확정 등은 당해 사업소득 등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83

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이루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등에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것만으로 각 조합원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사업소득금액 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공동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혀 조합원 등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사업장 등에서 유보하기로 조합원 등이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계산상 각자에게 배분·귀속시키는 것이다⁹⁷⁾.

이와 같이 공동사업장 등으로부터 배분된 소득금액에 다른 소득금액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다.

③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즉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소법 43 ③). 이와 같은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는 소비생활을 함께하는 가족 사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소득세의 부담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⁹⁸⁾.

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소령 100 ④).

(1) 사업의 종류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상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소득금액 내역·지분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

97) 同旨 :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98) 김완석, 『소득세법론』, (주)광교이텍스, 2008, p. 359.

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거래관계·손익분배비율·자산 및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의 제정취지와 법문에 비추어 볼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단독사업이면서 공동사업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가장함으로써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종국적으로는 소득세의 부담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 공동사업합산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2) 소득세 과세단위와의 관계

소득세의 세율구조가 초과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분산을 통한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함으로써 소득세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그런데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현행과 같이 개인단위주의를 고수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자들은 부부간 공동사업과세제도의 적용을 통하여 소득세 부담의 경감을 추구할 수 있다. 즉 부부(혹은 가족) 간에 민법상의 조합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공동사업과세제도를 적용받음으로써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피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단독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부부(혹은 가족) 간 민법상의 조합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공동사업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개인간에는 소득세 부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세 부담의 형평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와의 관계 검토

1)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제도의 개요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즉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여 국내에 있는 모든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대원 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에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①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 ②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 ③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둘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대원 중 주된 토지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리고 주된 토지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토지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주된 토지소유자라 함은 다음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 ②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는 자
- ③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2) 소득세 과세단위와의 관계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여 국내에 있는 모든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소비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이든 세대단위합산비분할주의이든 어느 경우에도 위헌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7년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에 관한 소득세법 제26조가 기본법 제6조 제1항(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⁹⁹⁾, 우리 헌법재판소도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단위합산비분

99) 1957. 1. 17, BVerfGE Bd. 6, S. 55.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87

할주의를 규정하고 있던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제1항이 혼인한 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¹⁰⁰⁾.

그러므로 소득세의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세대단위합산비분할주의나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더 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다.

이에 반하여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대단위 합산비분할주의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를 규정하고 있던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제1항이 혼인한 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02.8.29. 선고 2001헌바82)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위헌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즉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대단위 합산비분할주의에 관하여는 합헌이라는 견해와 위헌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방지 등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경제생활 단위별 과세의 실현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 데 반해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익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

100)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고 판시하였다¹⁰¹⁾. 이는 소득세제와 종합부동산세제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판결근거가 됨을 보여준다.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일반적·추상적인 비교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 취급으로 인한 부작용의 면에서 보거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증여세과세와의 관계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증여세 과세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제도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제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의 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⁰²⁾.

101)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102) 헌법재판소 1997. 10. 30. 결정 96헌바14.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89

① 증여세는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조세이다. 구 상속세법은 증여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증여의 의미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554조에 의하면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세는 이러한 의미의 증여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다만, 조세정책상 비록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요건이나 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입법화한 것이 곧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들이다. 어떤 사항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는 자의적 방식으로 또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거나 우대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증여의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 부부재산계약제(민법 제829조)와 법정재산제(민법 제830조 내지 제833조)의 이원적 구성방법을 채택하여, 부부인 당사자가 부부재산계약제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법정재산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법정재산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민법은 법정재산제의 내용으로 완전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하면서 다만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별산제 하에서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특히 가사노동의 경우)가 잘 반영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처가 이혼 후의 생활 곤란을 염려하여 경제적 강자인 남편의 부당한 대

우를 그대로 인종할 수밖에 없어 혼인관계의 자유와 평등을 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90. 1. 13. 민법 중 가족법 부분의 개정에 의하여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될 때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③ 우리의 경험칙상 혼인 중 형성되는 재산의 상당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소유명의는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분할제도는 바로 위와 같은 경우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한다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이러한 재산을 부부별산재라 하여 이혼시 형식상 명의자인 어느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를 분할의 주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제도의 이러한 본질이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재산분할제도에는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라는 요소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재산분할제도에 이러한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한 점에 미루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④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 재산취득자의 소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

⑤ 이미 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혼시 배우자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

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는 전혀 없다.

⑥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⑦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여세의 상속세 보완세적 기능을 관철하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배우자 상속과 이혼 시 재산분할의 재산관계의 본질적이고도 다양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받는 혼인당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2) 소득세 과세단위와의 관계

위의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이혼 시 배우자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본질이 부부간의 공유재산의 분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점이다.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 부부공유재산의 분할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이와 같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및 성격을 조세법의 해석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점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판결을 통하여 소득세의 과세단위의 설계에 있어서도 민법상의 부부재산제를 존중하여 그와 같은 부부재산제의 바탕 위에 구축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민법상의 부부재산제와 조화하여야 하며 체계 일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소결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1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헌법 제17조) 조항과 잘 부합된다.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도 개인단위주의와 일치하는 부부재산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조항도 있다. 민법상 허용하고 있는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본질이 부부간의 공유재산의 분할에 가깝고 이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아 사실상 공유재산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¹⁰³⁾. 이러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입장 차이는 법률의 일관성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와 공동사업과세제도의 경우 개인단위주의 아래에서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회피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가족간에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민법상의 조합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 혹은 공동사업과세제도를 적용받음으로써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피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과의 조화를 피하면서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혹은 공동사업과세제도를 통한 소득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단위의 조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민법상의 부부재산 관련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민법상 부부

103) 헌법재판소 1997년 10월 30일 96헌바14결정. 동 결정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아 증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법학적 분석 93

재산제뿐만 아니라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개인비밀 및 자유 보장 조항과도 부합되며 동업기업과세특례 혹은 공동사업과세제도를 통한 조세회피 유인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과세단위의 선택은 법적인 일관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인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과세단위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과세단위를 이미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환하는 것은 개인 및 부부의 경제행위 변동과 이에 따른 세수의 급격한 변화, 소득세 재분배 기능의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단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변화 규모,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분포의 변화, 대응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Ⅲ.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세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부부에 대한 과세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효용 측면에서 개인과 부부의 바람직한 과세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부의 노동공급결정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초기 소득세를 설계할 때 과세단위의 결정에 중요한 접근법으로 주로 이론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이미 특정 과세단위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도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제도 변경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크다면 적절한 이행과정이 요구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전환을 위해 적절한 대응정책이 요구될 수도 있다. 주로 실증분석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1절에서 검토하여 부부과세에 적합한 방법을 고찰하고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실증적 관점에서 법학적 분석을 통해 가능성으로 제시된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제2절에서는 과세단위 변동의 실증분석을 위해 노동참가율의 탄력성을 추정하고 제3절에서는 그 결과를 이용하여 과세단위 조정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1. 이론적 분석

가. 배경

소득세 과세단위와 관련된 이슈는 1948년 미국의 부부합산과세 제도 도입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Gann(1990)에서 잘 정리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소득세 과세단위와 관련된 경제적 이슈를 요약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단위로 개인, 부부, 가구 중 어떤 기준을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소득세제의 누진성과 연관되어 그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만약 소득세 부담이 비례세율로 결정된다면 과세단위의 선택은 개인의 세부담 수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해 누진과세, 비례세율과세 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수 있지만 누진성에 대한 검토는 본 보고서에서 제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누진적 소득세제라는 가정하에서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주된 논의 방향은 혼인상태를 과세단위의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개인단위 과세를 주장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의 혼인상태는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인 여부가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더 나아가면 혼인에 대한 선택을 다른 생산물 소비 선택과 같은 개인적 선택의 관점으로 보아 소득세 부담수준 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자산, 계약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의 세부담에 있어서도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부 혹은 가구단위¹⁰⁴⁾의 소득세 부담결정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결혼한 부부는 총소득이 동일하다면 같은 세부담을 부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결혼한 부부의 세 부담 능력은 부부의 개별소득의 합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대부분의 부부는 개인별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여 그 혜택도 동일하게 향유함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동일한 소득의 부부는 동일한 세 부담을 갖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가 개인적으로 국가적 법률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자산 혹은 계약은 소득세적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게 된다. 소득세 부담이 부부의 총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의 귀속 여부가 부부 사이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부간의 소득공유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강한 가정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현행 법률체계를 통해 허용하고 있는 자산의 개별 소유권체계의 경제적 중요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부단위 소득세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개인과 비교한 부부의 적절한 세 부담 수준 결정이라는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즉 부부와 개인이 동일한 세율구조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그리하여 부부의 소득이 3천만원일 때 개인소득 3천만원인 경우와 세 부담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결정되어야 한다. 혹은 부부의 세 부담이 총소득이 동일한 개인 2명의 세 부담의 합과 일치하여야 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제의 결혼에 대한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 2명의 세 부담이 동일소득의 부부 세 부담과 일치하는 것이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104) 논의 초점을 부부와 개인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자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과세단위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소득세제에서 자녀에 대한 고려가 아닌 혼인 여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별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자녀는 당연히 제외되게 될 것이고, 부부단위 과세가 바람직하여 부부간 소득을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논리를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I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97

결혼에 대한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일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 획득 유형에 따라 부부간 세부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총소득이 동일한 부부의 경우 모두 세부담이 같아야 하는지 혹은 부부 중 한 명만 일할 경우 부부 두 명이 일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부부 중 한 명만 일할 경우 높은 세부담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하지 않는 배우자가 공급하는 가정서비스에 대한 과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득과세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과세단위와 연관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Oldman and Temple(1960)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의 형평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 ① 결혼하지 않은 개인은 동일한 소득의 1인 근로부부에 비해 높은 세부담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1인 근로부부는 동일한 소득의 2인 근로부부에 비해 높은 세부담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2인 근로부부는 총소득이 동일한 개인 2인에 비해 높은 세부담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형평성은 규모의 경제를 감안한 상대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타당성이 감소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의 경우 과세되지 않는 가정서비스를 감안한 것이나 첫 번째 기준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즉 첫 번째 기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인 근로부부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가정서비스 효과보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야 하나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ittker(1975)는 수직적 형평성을 포함하여 소득과세가 추구하여야 할 형평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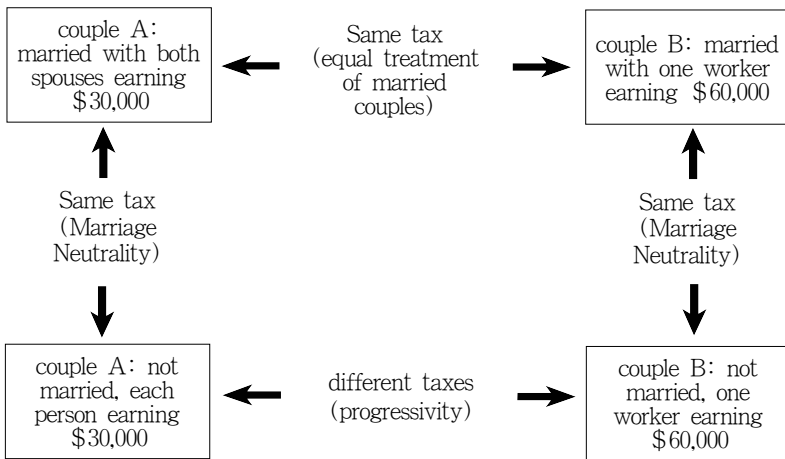
- ①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구성하여 높은 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소득의 부부는 동일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소득세는 결혼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여 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결혼 후에도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저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누진적 소득세하에서는 두 번째 기준과 세 번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기는 불가능하다. 누진적 세율구조의 소득세제는 개인단위 소득세제하에서만 결혼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두 번째 기준인 동일한 소득의 부부가 동일한 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결국 두 번째 기준과 세 번째 기준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호배타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의 기준들간에 존재하는 상호 연관성을 감안하면 향후 소득세의 형평성 기준은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가정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원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누진성의 원리는 수직적 형평성의 달성을 위해 포기하기 어려운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림 III-1] 소득세제 목표들간의 상충성



자료: CBO, For Better or Worse: Marriage and the Federal income tax, 1997,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I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99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는 다양한 형평성 목표들 중 가구간의 과세 형평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소득세제의 도입 당시부터 개인단위 과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제도 내에서 고려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인단위 과세제도는 누진성의 원리를 기초로 Bittker(1975)의 형평성 세 번째 원리인 결혼에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원리인 동일한 소득수준인 결혼한 부부간의 과세 형평성은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단위 과세제도는 1974년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제도 운영의 일관성에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부부합산과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동 제도가 과거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가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함으로 인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로 유보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 재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개인단위 소득과세와 다른 논리에 의해 부과되는 동 제도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82에 따르면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가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배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의 결혼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혼인을 이유로 혼인하지 않은 소득자보다 높은 조세부담을 유도하는 조항은 헌법의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조세제도의 형평성 중 결혼한 부부간의 세부담 공평성은 과세단위의 조정이 아닌 다른 방안을 통해 접근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2008년부터 시행하는 근로장려금제도의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여 지원금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학적 논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경제학적 관점의 접근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부부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과세문제가 각 소득자의 한계효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자산의 공유, 규모의 경제 등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관점의 논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선행연구 및 이론적 분석

가족에 대한 과세이론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이미 부부단위 합산과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중요한 이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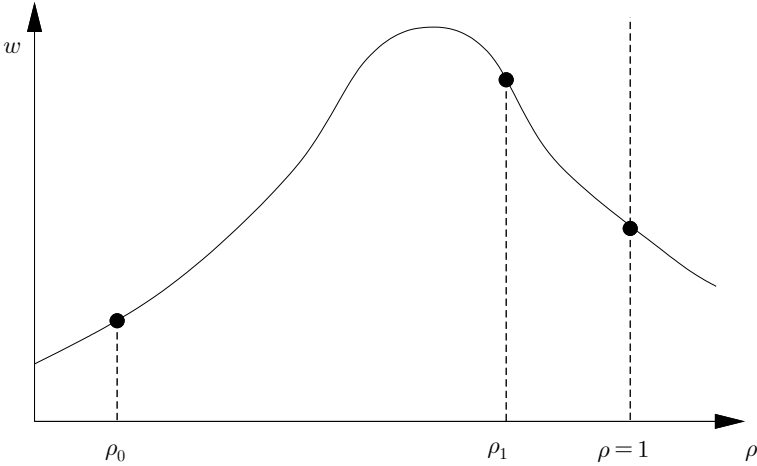
Boskin(1975)은 가족에 대한 과세보다는 자가소유주택 및 주부의 노동으로 야기되는 암묵적 소득에 대한 과세 실패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정 내 생산에 비해 시장 생산에 높은 세부담을 부여하는 미국의 조세제도가 야기하는 효용의 감소를 추정하였다. 상대적으로 낮게 과세되는 가정부문의 존재는 동 부문으로의 자본 및 노동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일반균형분석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산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oskin and Sheshinski(1983)은 결혼한 부부의 최적과세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분석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선 서로 다른 소득능력을 가진 부부에 대해 최적소득세율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자기 및 교차 노동공급탄력성과 임금률의 결합분포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소득을 분할하여 부부가 동일한 한계세율에 직면하는 구조는 최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감도 분석 등을 감안하면 부부 중 이차소득자에 대한 최적소득세율은 주된 소득자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Piggott and Walley(1996)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가정 내 생산과정의 요소투입 왜곡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부부의 노동공급탄력성 차이에 의한 Ramsey적 고려와 과세기준 변경으로 인한 가정 내 생산의 투입구조 왜곡을 동시에 반영하여 가구단위과세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세단위 변경과 시장 및 가정생산의 탄력성 계수가 특정한 경우, 가구단위과세가 국가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호주에 대한 분석에서 보여주었다.

Apps and Rees(1999)는 Piggott and Walley(1996) 분석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였다. 즉 대표적인 개인의 한계세율을 상정함에 있어 이차소득자에 대해 너무 낮은 한계세율을 가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차소득자의 경우, 노동시장의 참여시간에 대한 변화폭이 넓어 평균적인 추정 은 과세단위 변화가 초래하는 시장참여자의 한계세율을 대표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이차소득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 한계세율이 0이고 이러한 경우를 포함한 대표적 한계세율의 산정은 과세단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시장참여 이차소득자들의 한계세율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사회후생을 이차소득자와 일차소득자의 한계세율 비율의 함수로 표현하였을 때 나타나는 역U형 구조의 어떤 부분에 현재 상태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경제적 시사점을 다르게 제공한다. 즉 Piggott and Walley(1996)는 그 비율이 매우 낮아(그림의 ρ_0) 과세단위 변경으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Apps and Rees(1999)는 그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추정되어 이를 감안할 경우(그림의 ρ_1), 과세단위 변경이 사회후생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과세단위의 문제는 가구 내 분배 형평성의 문제를 포함하고 여성 노동공급의 넓은 변화 범위를 감안할 때 한 가지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이슈임을 주장하였다.

[그림 III-3] 사회후생(w)과 한계세율비(ρ =이차소득자/
일차소득자)의 관계



한편 가구(혹은 부부)단위와 개인단위 과세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와는 별도로 가족구성의 특징을 감안하여 최적과세론의 입장에서 적합한 과세방법을 찾아본 연구들도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개인과 가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전체 효용을 최대화하는 세부담 분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계세율과 노동공급탄력성을 감안한 인센티브의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효용 측면에서 세부담 분포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Kaplow(1992)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지불능력의 개념보다 전체 효용의 측면에서 개인과 가구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구성원이 소득을 동일하게 나눌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 여부, 가구원간 효용이 상호 독립적일 때,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질 때 등의 경우에 대한 개인과 부부의 한계효용이 일치하는 과세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부록2 참조).

Brewer, Saez, and Shephard(2007), Kleven, Kreiner, and Saez(2006) 등은 주소소득자와 부소득자의 특성을 감안한 모델을 상정하고 최적조세론의 입장에서 한계세율을 도출하고 이를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부부에 대한 과세에 있어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구분과 함께 소득자 유형에 따른 행태 변화의 유형, 즉 intensive margin 혹은 extensive margin,을 감안하여 부부에 대한 최적한계세율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최적한계세율 구조에 어떠한 과세단위가 더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인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 Brewer, Saez, and Shephard(2007), Kleven, Kreiner, and Saez(2006) 접근법

Klevin et al(2006)은 가구에 대한 최적과세방안을 도출하면서 구성원의 행태 변화 행태를 고려하였다. 즉 주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세율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는 가정하에 intensive margin을 고려한 반면 부소득자의 경우 세율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여부가 크게 반응함을 고려하여 extensive margin을 고려하였다. 이전의 연구가 주로 intensive margin만 고려한 점을 감안할 때 진보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가) intensive margin 모형

소비(c)와 소득(z , 근로에 대한 비효용의 대리변수) 두 재화 모형을 상정하여 개인(n)의 효용함수를 구성하면 $u = u^n(c, z)$ 이 된다. 효용함수는 소비(c)에 대한 증가함수이며 소득(z)에 대한 감소함수이다. 개인이 직면한 선형 소득제약을 $c = z(1 - \tau) + R$, τ 는 한계소득세율, R 은 비노동소득(Virtual income)으로 가정하면 효용최대화 문제로부터 일계조건 $(1 - \tau)u_c + u_z = 0$ 이 도출된다. 일계조건에서 소득은 세후소득률과 비노동소득의 함수 $z = z(1 - \tau, R)$ 로 유도될 수 있다. 소득효과, 즉 R 의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면 소득은 세후소득률의 함수로 나타나며 다음의 탄력성을 통해 쉽게 분석할 수 있다.

$$e = \frac{1-\tau}{z} \frac{\partial z}{\partial(1-\tau)}$$

- 최적최고세율

최적최고세율은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우선 최고세율 τ 을 $d\tau$ 만큼 인상시킬 때 나타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세율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세수 변화이다. 최고세율 적용 시작 소득을 \bar{z} , 최고세율 구간 소득에 속한 소득의 평균을 z 라고 할 때 직접적인 세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dM = N[z - \bar{z}]d\tau > 0$$

여기서 N 은 최고세율 구간의 납세자 수이다. 직접적인 세수 변화는 어떤 행태 변화도 없을 경우 나타나는 세수증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세율증가로 인한 행태 변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그 결과 세수도 감소하는 효과이다. 세율인상으로 인한 납세자의 소득 변화는 앞서 도출된 탄성치를 이용하여 $dz = -e \cdot z \cdot d\tau / (1-\tau)$ 로 표현된다. 납세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다.

$$dB = -N \cdot e \cdot z \cdot \frac{\tau}{1-\tau} d\tau < 0$$

셋째는, 최고소득계층의 추가부담으로 인한 후생손실이다. 후생손실은 기본적으로 추가부담세액(dM)에 정부가 평가하는 최고 소득계층의 단위 소득증가의 가치(g)를 곱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정부의 소득 재분배에 대한 관점은 대상 계층의 단위 소득증가에 대한 가치로 표현되며 만약 재분배에 대한 가치가 경제 내 평균적인 납세자와 동일하다면 그 값은 1이 되어 후생손실은 세부담 감소와 동일하게 된다. 만약 정부가 소득계층간 재분배에 가치를 두게 되면 g 값은 1보다 작게 되며 최고소득 납세자계층의 소비에 대한 한계가치가 평균적인 납세자에 비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g 값은 0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후생손실은 다음과 같다.

$$dW = -gN(z - \bar{z})d\tau < 0$$

이러한 세 가지 효과를 종합하면 정부에서 바라보는 세율 변경의 총 효과가 된다.

$$dM + dB + dW = Nd\tau(z - \bar{z}) \left[1 - g - e \frac{z}{z - \bar{z}} \frac{\tau}{1 - \tau} \right]$$

최적최고세율은 세율 변화로 인한 총효과가 0이 되는 수준으로 이는 다음과 같다.

$$\tau^* = \frac{1 - g}{1 - g + a \cdot e}$$

여기서 $a = z/(z - \bar{z})$ 이다. 최적세율은 정부의 최고소득 납세자 계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가치의 감소함수이며, 행태 변화를 나타내는 탄성치(e)의 감소함수이다. 또한 최고소득계층의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a 값에 대해서도 감소함수이다. 만약 정부의 최고소득 납세자 계층에 대한 재분배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즉 최고소득 납세자 계층의 소비변화를 평균적인 납세자에 비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g = 0$ 이 되며 최적최고세율은 $1/(1 + a \cdot e)$ 이며 세수를 최대화하는 최고세율이 된다.

- 최적한계세율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최적한계세율도 유사한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선형 조세함수, $T(z)$ 를 가정하며 이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도 포함할 수 있다. 소득분포에 대해서는 누적분포함수 $H(z)$, 즉 소득수준이 z 보다 적은 사람의 비율과 납세자의 밀도분포 $h(z)$ 를 가정한다.

정부가 소득구간 $(z, z + dz)$ 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T'(z)$ 를 $d\tau$ 만큼 변화시킬 경우 정부 관점에서 바라본 세 가지 효과의 변화를 통해 최

적세율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율인상으로 인해 $(z + dz)$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부담은 $d\tau dz$ 만큼 증가하게 되며 이에 납세자의 규모를 적용하면 세율 변화로 인한 추가 세수가 도출된다.

$$dM = (1 - H(z))d\tau dz$$

둘째, 세율 변경이 야기하는 행태 변화로 인해 $(z, z + dz)$ 구간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소득은 $-e \cdot z \cdot d\tau / (1 - T'(z))$ 만큼 줄어들게 된다. 동 소득구간에 속한 납세자의 수 $h(z)dz$ 를 적용하면 행태 변화로 인한 세수감소는 다음과 같다.

$$dB = -e \cdot z \cdot \frac{T'(z)}{(1 - T'(z))} d\tau \cdot h(z)dz$$

셋째, 소득수준이 z 이상인 납세자는 세율증가로 인해 후생손실을 경험한다. 소득 z 이상 납세자에 대한 단위소득 분배의 가치를 $G(z)$ 라 할 때 후생손실은 $dW = dM \cdot G(z)$ 이다. 만약 정부가 재분배에 가치를 두게 되면 $G(z)$ 는 소득 z 에 대한 감소함수가 된다. 소득효과가 없다는 가정을 유지하면 $G(0) = 1$ 로 모든 사람에게 단위소득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행태 변화가 없다.

최적수준에서는 이 세 가지 항목의 변화가 0이 되며 다음과 같이 최적한계세율이 도출된다.

$$\frac{T'(z)}{1 - T'(z)} = \frac{1}{e} \frac{1 - H(z)}{zh(z)} (1 - G(z))$$

최적한계세율 $T'(z)$ 는 행태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탄력성의 감소함수이다. 만약 고소득층의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커다면 한계세율은 낮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적세율은 정부의 소득 z 이상 납세자에 대한 재분배가치 $G(z)$ 의 값의 감소함수이다. 즉 고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가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한계세율은 높아지게 된다. 소득분포의 두께를 측정하는 위험률, $(1 - H(z)) / (zh(z))$ 은 최저한계세율을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즉 소득수준 z 보다 높은 사람이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을 때 한계세율을 높여주는 것이 최적이다.

나) extensive margin 모형

intensive margin 모형을 이용할 경우, 노동시장에의 진출입 효과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혹은 가구내 이차소득자들의 경우 조세제도의 변경이 노동시장 진출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분석하기에는 extensive margin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필요하다.

개인이 extensive margins으로만 반응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변화하는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시 소득을 얻게 된다. 즉 능력 z 인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z 의 소득을 받게 되며 세후소득은 $z - T(z)$ 가 된다. 만약 개인이 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T(0)$ 의 소득을 얻게 된다. 개인의 효용함수를 $u = c - q$, c 는 소비, q 는 근로비용이라 가정한다. 이 경우 개인은 세후소득 $z - T(z) + T(0)$ 이 근로비용 q 를 초과할 경우 노동시장에 참가하게 된다. 만약 능력 z 를 가진 개인의 근로비용 q 의 누적분포를 $P(q|z)$ 하면 z 의 능력을 가진 개인 중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는 $P(z - T(z) + T(0)|z)$ 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순근로수입에 대한 노동시장 참가의 탄력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ta_z = \frac{z - T(z) + T(0)}{P} \frac{\partial P}{\partial q}$$

최적한계세율을 도출하기 위해 능력 z 인 개인에 대해서만 세율을 $T(z)$ 에서 dT 만큼 증가시킨다고 가정한다. extensive margin의 영향만 분석함으로써 인해 그 효과는 능력 z 인 개인에게만 나타난다. 이러한 세율 변화로 인한 세가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인상으로 인한 직접적 세수효과로 능력 z 인 모든 근로자에게서는 dT 만큼 추가적인 세수입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 직접 세수증

가는 $dM = P(q|z)dT$ 이다.

둘째, dT 만큼의 세율인상이 야기하는 행태 변화는 능력 z 인 근로자 중 일부의 노동시장 불참이다. 즉 근로비용 q 가 $z - T(z) + T(0) - dT$ 와 $z - T(z) + T(0)$ 사이인 근로자들은 모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노동시장에 불참하게 되는 근로자의 수는 $dT \partial P / \partial q = dT \eta P / (z - T(z) + T(0))$ 이며 행태 변화로 인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dB = \frac{T(z) - T(0)}{z - T(z) + T(0)} \eta P(q|z) dT$$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자의 경우 dT 의 범위 안에서 근로와 비근로가 무차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근로에서 근로로의 이차적 이동은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셋째, 세율변경으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나타나는 능력 z 인 근로자의 후생손실이다. 만약 소득 z 인 납세자들에게 1원의 소득을 분배하는 사회적 가치를 $g(z)$ 라 할 때, 후생손실은 $dW = dM \cdot g(z) = P(q|z)g(z)dT$. 만약 정부가 재분배에 가치를 둘 경우 $g(z)$ 는 소득에 대한 감소함수가 될 것이다. 소득효과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소득 수준 z 를 총괄하는 평균 $g(z)$ 는 1이 될 것이다. 즉 모든 납세자에게 1원을 재분배함에 따른 사회적 가치는 비용 1원과 동일하게 된다.

최적수준에서는 $dM + dB + dW = 0$ 이 성립하게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근로에 따른 평균세율을 $t(z) = (T(z) - T(0))/z$ 라 정의하면,

$$\frac{t(z)}{1 - t(z)} = \frac{1}{\eta} (1 - g(z))$$

이 결과는 단순한 탄력성법칙을 보여주고 있다. 즉 평균세율은 탄력성과 역의 관계를 나타내며 동시에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 $g(z)$, 혹은 소득 z 인 납세자의 한계소비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도 감소함수로 나타난다.

I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09

만약 정부가 소득재분배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g(z)$ 는 소득 z 에 대해 감소함수로 나타나며 모든 납세자에 대한 평균은 1이 될 것이다. 이는 $g(z)$ 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보다 큰 값을, 고소득층에게는 1보다 작은 값을 보일 것임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g(z)$ 값을 윗 식에 대입하면 저소득층에게 음(-)의 평균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저소득층은 근로 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intensive margin의 모형결과와 대비된다. 이 결과는 소득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유지된다.

intensive margin과 extensive margin 측면의 분석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인하로 intensive margin의 소득 및 대체효과로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나 extensive margin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두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 가구에 대한 과세

Brewer, Saez, and Shephard(2007)는 부부에 대한 과세에 있어 일차소득자는 intensive margin 모형, 이차소득자에게는 extensive margin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에 대한 과세문제를 분석하였다. 일차소득자의 경우 가구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세율 변화에 대해 노동시장 참가보다는 노동시간의 변동효과가 클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이다. 반면 이차소득자는 노동시장 참가 결정 자체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extensive margin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일반적 직관과 다르게 나타난다. extensive margin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가구내 이차소득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총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대한 가치 $g(z)$ 의 값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Brewer, Saez, and Shephard(2007)는 이차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일

차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야 함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일차소득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아야 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직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주어진 일차소득자의 소득수준에서 맞벌이부부는 언제나 홑벌이부부보다 소득수준이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맞벌이부부로부터 홑벌이부부로 재분배를 원하게 된다. 재분배의 가치는 이차소득자의 가구 내 기여도가 큰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재분배의 가치를 고려한 이차소득자에 대한 과세수준은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욱 높아지게 된다. 동시에 이는 왜 이차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이 일차소득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낮아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만약 맞벌이부부에 대한 과세스케줄이 기본으로 제시되고 홑벌이부부에 대한 과세가 기본과세방법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제수준은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일반적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이차소득자에 대해 암묵적인 조세가 되며 이는 일차소득자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부합산누진과세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립적인 개인단위 과세가 최적에 가까운 방안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부부(혹은 가구)단위 소득에 기초하여 운영되며 소득증가에 따른 지원금액의 점진적 축소는 이차소득자에 대한 암묵적 조세로 작용한다. 이때 암묵적 조세는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영국의 Income Support, Child Tax Credit, Working Tax Credit, 미국의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Tax Credit(CDCTC),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 캐나다의 Canada Child Tax Benefit,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Working Income Tax

Benefit, 호주의 Family Tax Benefit Part A 등이 이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근에 도입한 근로장려금제도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의 이차소득자는 배우자의 소득이 낮을 경우 이차소득자의 소득이 상기 제도들의 세액공제 금액을 하락시키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세율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의 제도운영은 부부에 대한 최적과세 이론과 일치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2. 노동시장 참여유인 변화

가. 분석자료 개요

본절에서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에서 가구단위, 즉 개인과 세에서 부부합산과제로 전환시 가구주인 남성과 배우자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행위 변화에 대한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본절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중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 참가 확률의 탄력성을 도출한다.

본절에서 사용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노동패널)는 1998년부터 매년 개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중인 패널조사로 횡단면 정보와 시계열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노동패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5,000가구 및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10차 조사까지 완료되었다. 조사된 자료는 원자료 형태가 아니라 자료 클리닝(cleaning) 과정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서 제공됨에 따라 현재까지 1차 조사자료부터 9차 조사자료까지 현재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¹⁰⁵⁾. 노동패널 조사는 매년 한 차례씩 동일한 가구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거의 동일한 조

사를 반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원표본 가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패널의 원표본 가구의 유지율은 2차년도(1999년) 87.6%, 3차년도(2000년) 80.9%, 4차년도(2001년) 77.3%, 5차년도(2002년) 76.0%, 6차년도(2003년) 77.2%, 7차년도(2004년) 77.3%, 8차년도(2005) 76.5%, 9차년도(2006) 76.5%로 나타났다¹⁰⁶⁾.

노동패널 자료의 조사는 1차년도 원가구와 원가구원¹⁰⁷⁾을 주된 대상으로 행해지며, 출생과 혼인 등으로 원가구에 새로이 추가된 가구원('비원가구원')도 추적하여 조사한다. 또한 혼인 등으로 원가구원이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다면 그 가구('신규가구') 및 '신규가구' 내에 존재하는 기타 가구원인 '비원가구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패널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세대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¹⁰⁸⁾(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 조사 자료 User's Guide).

노동패널의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가구용 설문은 반드시 직접 면접을 행해지고 있다. 직접 면접의 원칙은 면접원이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

105) 노동패널 1개연도 자료는 조사설계부터 자료발간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106) 노동패널의 원표본 가구의 유지비율은 다른 나라의 주요 패널자료(예: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함을 알 수 있다(제3회 KLIPS 자료설명회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

107) 원가구에 소속된 만15세 이상의 개인을 말한다.

108)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을 참조하라.

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용 설문 의 경우도 면접원이 설문문항을 응답자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이나 전화조사가 이루어진다.

노동패널의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패널의 표본들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에서 사용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인 전국의 21,938조사구 중에서 제주도의 263조사구와 군부지역의 2,650조사구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의 19,025조사구이다¹⁰⁹⁾. 따라서 노동패널 표본의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시 조사구에 거주하는 가구가 된다. 노동패널은 2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한다. 1단계에서는 19,025조사구 중에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조사구 내에서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5가구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였다.

노동패널의 자료가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로 구성되는데 이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도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된다. 개인용 설문지는 취업자용 설문지와 미취업자용 설문자로 나뉘지고, 취업자용 설문지는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된다. 아래의 <표 III-1>은 1~9차년도 노동패널의 설문지 구성을 보여준다.

109) 최초 표본 추출단계에서는 군부가 제외되었지만 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부로 이주한 가구가 발생하여 최종 표본에는 군부지역 가구가 일부 포함되었다.

〈표 III-1〉 1-9차년도 KLIPS 설문지의 구성

		구 성		
1차년도(1998)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임금근로자 개인 비임금근로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2차년도(1999)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유형 ①~⑧ 개인공통		
	신규용 설문			
3차년도(2000)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유형 ①~⑧ 임금근로자 개인 비임금근로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신규용 설문			
	부가조사 설문(청년층)			
4차년도(2001) ~ 9차년도(2005)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유형 ①~⑧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신규용 설문			
	부가조사 설문	4차	건강과 은퇴	
		5차	없음	
		6차	중고령자 부가조사	
		7차	근로시간과 여가	
		8차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9차	청년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p. 28.

나. 분석자료의 특성

본절의 분석단위는 개인이지만 가구소득 및 가구 특성 등 가구용 변수가 개인들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중요한 설명변수이기 때문에 노동패널의 개인용 자료뿐만 아니라 가구용 자료도 사용한다. 또한 특정 연도에 대한 개인들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는 다음 연도 노동패널에서 조사한 전년도 근로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단위 전환 시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 참가 행위를 분석함에 있어서 8차년도(2005년)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되 9차년도(2006년) 자료를 부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에 실시한 8차년도 조사에서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총 4,762 가구이며 총 응답 가구원은 11,661명이다. 본장의 분석은 이철인(2006)과 Leuthold(1984) 등 노동공급 또는 경제활동 참가에 관한 많은 기존문헌에서 사용한 '전통적인 가구모형'을 기초로 한다. 이에 4,762개의 유효 표본가구 중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가 존재하며 가구주의 연령이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를 분석대상 가구로 선정한다. 또한 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받은 가구와 사회보험을 제외한 이전소득을 받은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 결과 남은 가구의 수는 1,490개이다.

아래의 <표 Ⅲ-2>에서는 분석대상 가구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여 주고 있다.

〈표 III-2〉 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

변수	관측치 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주 경제활동참가 더미 ¹⁾	1,490	0.93	0.25	0	1
배우자 경제활동참가 더미 ²⁾	1,490	0.43	0.50	0	1
가구주 연령	1,490	44.5	8.5	25	64
배우자 연령	1,490	41.4	8.3	23	65
가구주 교육연수	1,490	12.6	3.1	0	27
배우자 교육연수	1,490	11.7	2.8	0	18
6세 이하 자녀 수	1,490	0.3	0.6	0	3
7세~18세 자녀 수	1,490	0.8	0.9	0	4
부양가족 수	1,490	0.9	0.9	0	4
수도권 거주여부 ³⁾	1,490	0.6	0.5	0	1
가구주 세후 연간근로소득	1,390	29.7	20.9	.98	240
배우자 세후 연간근로소득	643	15.7	13.9	.4	144
세후 비근로소득 ⁴⁾	1,490	2.2	15.3	0	406.4

주: 1) 과 2) 경제활동참가=1, 경제활동비참가=0

3) 수도권=1, 비수도권=0

4) 세후 비근로소득=세후 금융소득+세후 부동산소득

5) 소득변수들의 단위는 만원임.

다. 분석모형

본절에서는 사용한 모형은 이철인(2006)과 Leuthold(1984)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노동시장 참가 모형'이다. 본 모형에 따르면 각 개인은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시장임금을 비교하여 노동시장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유보임금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시장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유보임금은 개인이 주어진 모든 시간을 여가로 소비할 경우 여가로 보낸 시간의

화폐적 가치를 반영한다. 만약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크다면 그 개인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를 하는 반면, 유보임금보다 같거나 작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전통적 가구모형’에서는 남성가구주의 경우 일차적인 근로소득자(primary income earners)로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가행위는 여성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 행위 및 그 결과인 여성배우자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즉, 남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는 자신의 시장임금과 가구 전체의 비근로소득에 의존할 뿐이지 여성배우자의 근로소득과는 독립적이라고 본다. 이에 반하여, 여성배우자는 가구 내에서 이차적인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가구 전체의 비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남성가구주의 근로소득에도 의존한다. 즉, 여성배우자의 경우 남성가장의 근로소득도 마치 자신이 누리는 가구 비근로소득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하여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함수(LFP)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FP_h = f(Y_h, N, Z) \quad (III-1)$$

$$LFP_w = f(Y_w, Y_h + N, Z) \quad (III-2)$$

여기서 LFP_h 는 남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함수이고, LFP_w 는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함수이다. Y_h 는 남성가구주의 세후 근로소득이고, Y_w 는 여성배우자의 세후 근로소득이며 N 은 가구의 세후 비근로소득을 의미한다. 한편 Z 는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집합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참가는 그 개인이 받는 근로소득과 양(+)의 관계가 존재하고 비근로소득과는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경제활동참가함수를 추정할 때 본 보고서에서는 프로빗(probit)모형을 사용한다.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프

빗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면하는 계량경제학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들의 경우 근로소득 변수를 관찰할 수 없고, 참여한 개인들의 경우 소득변수에 측정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Heckman이 제시한 2단계 추정법을 통해 개인들의 근로소득을 추정함으로써 앞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Heckman이 제시한 2단계 추정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각 개인의 아래와 같은 경제활동참가함수에 대하여 프로빗 분석을 수행한다.

$$LFP_h = f(X_h, N, Z) \quad (\text{III-3})$$

$$LFP_w = f(X_w, Y_h + N, Z) \quad (\text{III-4})$$

여기서 X_h 와 X_w 는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 각각의 근로소득을 설명해 주는 변수 집합으로서 각자의 연령, 교육정도 등이다. 위의 함수들에 대하여 프로빗 추정을 행한 후 잔차들로부터 각각의 Mills ratio의 역수(λ)를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노동시장에 참가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근로소득함수를 추정한다.

$$Y_h = g(X_h, \lambda_h) \quad (\text{III-5})$$

$$Y_w = g(X_w, \lambda_w) \quad (\text{III-6})$$

위의 두 근로소득함수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분석대상 표본에 있는 모든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들의 '가상 세후 근로소득($\widehat{Y}_h, \widehat{Y}_w$)'을 도출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아래의 경제활동참가함수들과 같이 가상 세

후 근로소득 \widehat{Y}_h 와 \widehat{Y}_w 를 가지고 식 (III-3)과 (III-4)의 우변에 존재하는 X_h 와 X_w 를 대체하여 프로빗 분석을 수행한다.

$$LFP_h = f(\widehat{Y}_h, N, Z) \quad (\text{III-7})$$

$$LFP_w = f(\widehat{Y}_w, Y_h + N, Z) \quad (\text{III-8})$$

라. 분석결과

1) 남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대한 첫 번째 프로빗 추정의 결과가 아래의 <표 III-3>의 첫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세후 비근로소득 변수는 가구의 세후 금융소득과 세후 부동산소득을 합한 것으로 앞 소절의 수식에서 N 으로 표현된 변수이다. 다음 네 가지 변수(가구주의 연령, 연령 제곱, 교육연수, 수도권 거주 더미)는 가구주의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개의 변수(6세 이하 자녀 수, 7~18세 이하 자녀 수, 부양가족 수)는 남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포착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프로빗 추정의 주요 목적은 가구주의 근로소득함수 회귀식에 존재하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및 측정오차의 문제를 교정하는 데 사용할 Mills ratio 역수(λ)를 도출하는 데 있다.

〈표 III-3〉 경제활동 참가여부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남성가구주

변수	조정 전	조정 후
상수항	1.989 (1.868)	0.751*** (0.157)
가구주의 가상 세후 연간 근로소득	-	0.0243** (0.006)
세후 비근로소득	-0.0036 (0.002)	-0.0043* (0.002)
가구주 연령	0.014 (0.077)	-
가구주 연령의 제곱	-0.001 (0.001)	-
가구주 교육연수	0.039** (0.017)	-
수도권 거주 더미 ¹⁾	-0.121 (0.109)	-
6세 이하 자녀 수	-0.189 (0.183)	0.210 (0.162)
7세~18세 자녀 수	-0.072 (0.102)	0.041 (0.095)
부양가족 수	0.044 (0.113)	0.092 (0.111)
Critical Chi-Squared	165.43	40.79

주: 1) 수도권=1, 비수도권=0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3)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남성가구주의 세후 근로소득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프로빗 추정에서 산출한 Mills ratio 역수(λ)와 가구주 연령, 연령 제곱, 교육연수, 수도권 거주 더미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III-4〉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계수 추정치의 부호는 예상된 것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연령프로파일을 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소득은 증가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다시 감소하는 역U자 형태를 지닌다. 이는 연령의 경우 근로소득에 양(+)의 효과를 지니지만 연령 제곱의 경우 음(-)의 효과를 지니는 의

I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21

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근로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교육연수와 수도권 거주 더미는 근로소득에 양(+)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가구주의 가상 세후 근로소득의 OLS추정결과

변수	계수
상수항	-82.607*** (18.504)
가구주 연령	3.568*** (.826)
가구주 연령의 제곱	-0.039*** (0.010)
가구주 교육연수	2.404*** (0.252)
수도권 거주 더미 ¹⁾	0.383 (1.280)
Probit λ	22.600 (17.695)

주: 1) 수도권=1, 비수도권=0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3)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편 Mills ratio 역수(λ)의 계수 추정치는 양(+)의 효과를 지녔지만 통계적으로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 추정치의 부호가 양인 것은 평균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진 남성가구주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남성가구주가 그렇지 않은 남성가구주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을 벌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Mills ratio 역수(λ)의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비유의함은 현재 분석대상 표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한 남성가구주만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현재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경우 93% 달하는 대

부분의 남성가구주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가구주의 세후 근로소득 추정 결과에서 Mills ratio 역수(λ)를 0으로 놓고 모든 분석대상 남성가구주에 대하여 추정한 값이 가상 세후 연간근로소득이 된다. 이렇게 도출된 가상 세후 연간근로소득은 <표 III-3>의 두 번째 프로빗 추정식에 설명변수로 사용된다. 두 번째 프로빗 추정식의 결과에 따르면 남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참가는 본인의 세후 근로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졌고, 가구의 비근로소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수 및 7~18세 이하 자녀 수, 부양가족 수와도 양(+)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래의 <표 III-5>는 남성가구주의 경우 설명변수들이 경제활동 참가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5> 경제활동참가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 남성가구주

설명변수	세후 근로소득	세후 비근로소득	6세 이하 자녀수	7세~18세 자녀수	부양 가족수
한계효과 (dLFP/dx)	0.27%**	-0.05%*	2.34%	0.46%	1.02%

주: 1) 소득의 경우 단위는 1백만원임.

2) 한계효과는 세후 근로소득이 2,970만원, 세후 비근로소득이 22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0명, 7세~18세 자녀수는 1명, 부양가족수는 1명에서 측정함.

3) *, **은 각각 10%,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남성가구주의 경우 (가상) 세후 근로소득이 2,970만원, 세후 비근로소득이 220만원, 6세 이하 자녀 수는 0명, 7세~18세 자녀 수는 1명, 부양가족 수는 1명인 상태¹¹⁰⁾에서 (가상) 세후 근로소득만이 1백만원 상승하면 남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0.27%p 증가함을 의미

한다. 또한 동일한 상태에서 세후 비근로소득이 1백만원 상승하면 경제활동 참가 확률이 0.05%p 감소함을 나타낸다. 만약 주어진 상태에서 6세 이하 자녀수가 1명 증가하여 부양가족수도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제활동 참가 확률은 3.36p%(=2.34p%+1.02p%) 증가하게 된다.

만약 특정 가구가 위에서 가정한 평균적인 가구 상태와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경우, 남성가구주의 (가상) 세후 근로소득이 1% 상승한다면 남성가구주의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약 0.945에서 약 0.946로 0.085%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남성가구주의 경우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탄력성이 약 0.085임을 의미한다.

2) 여성배우자의 경우

여성배우자에 대한 분석도 남성가구주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여성배우자에 대한 첫 번째 프로빗 추정의 결과는 아래의 <표 III-6>의 첫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배우자의 경우 세후 비근로소득 변수는 가구의 세후 금융소득과 세후 부동산소득뿐만 아니라 남성가구주의 세후 근로소득도 포함하고 있는 변수이다. 다음 네 가지 변수(가구주의 연령, 연령 제곱, 교육연수, 수도권 거주 더미)는 남성가구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배우자의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개의 변수(6세 이하 자녀 수, 7~18세 이하 자녀 수, 부양가족 수)는 여성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포착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프로빗 추정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배우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소득함수를 추정할 때 존재할 수 있는 표본선택편의

110) 본 보고서에서 전체한 상태는 <표 III-2>에서 조사한 평균값에 근사한 상태이다.

(sample selection bias) 및 측정오차의 문제를 교정할 때 사용할 Mills ratio 역수(λ)를 도출하고 있다.

〈표 III-6〉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여성배우자

변수	조정 전	조정 후
상수항	-4.008*** (0.967)	0.105 (0.064)
배우자의 가상 세후 연간 근로소득	-	0.000290*** (0.000062)
세후 비근로소득 ¹⁾	-0.012*** (0.002)	-0.000119*** (0.000016)
배우자 연령	0.205*** (0.046)	-
배우자 연령의 제곱	-0.003*** (0.001)	-
배우자 교육연수	0.054*** (0.015)	-
수도권 거주 더미 ²⁾	-0.108 (0.068)	-
6세 이하 자녀 수	-0.416*** (0.103)	-0.252*** (0.095)
7세~18세 자녀 수	-0.117* (0.069)	0.014 (0.063)
부양가족 수	0.057 (0.071)	0.061 (0.070)
Critical Chi-Squared	145.88	88.49

주: 1) 남성가구주의 세후 연간 근로소득 포함.

2) 수도권=1, 비수도권=0

3) 괄호 안은 표준오차

4)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I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25

여성배우자의 세후 근로소득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프로빗 추정에서 산출한 Mills ratio 역수(λ)와 여성배우자 연령, 연령 제곱, 교육연수, 수도권 거주 더미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 III-7>은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계수 추정치의 부호는 예상된 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수들의 경우 연령 그 자체는 여성의 세후 근로소득에 양(+)¹⁾의 효과를 지니지만 연령 제곱의 경우 음(-)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여성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교육연수는 근로소득에 양(+)²⁾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 거주 더미 변수는 예상과 달리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배우자의 가상 세후 근로소득의 OLS추정결과

변수	계수
상수항	-69.057*** (17.816)
배우자 연령	1.980** (.790)
배우자 연령의 제곱	-0.020** (0.010)
배우자 교육연수	2.270*** (0.239)
수도권 거주 더미 ¹⁾	-2.116* (1.183)
Probit λ	14.371*** (2.708)

주: 1) 수도권=1, 비수도권=0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3)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편 Mills ratio 역수(λ)의 계수 추정치는 양(+)의 효과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남성가구주의 경우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 추정치의 부호가 양인 것은 평균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여성배우자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여성배우자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을 벌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Mills ratio 역수(λ)의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은 현재 분석대상 표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배우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통계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여성배우자 표본의 43%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의 여성배우자를 제외하면 근로소득함수 계수 추정치에 편(bias)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여성배우자의 세후 근로소득 추정 결과에서 Mills ratio 역수(λ)를 0으로 놓고 모든 분석대상 여성배우자에 대하여 추정한 값이 여성배우자의 가상 세후 연간근로소득이 된다. 이렇게 도출된 가상 세후 연간근로소득은 <표 III-6>의 두 번째 프로빗 추정식에 설명변수로 사용된다. 두 번째 프로빗 추정식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 참가는 본인의 세후 근로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졌고, 남성가구주의 세후 근로소득을 포함한 가구의 비근로소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수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7~18세 이하 자녀 수와 부양가족 수와는 양(+)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래의 <표 III-8>은 여성배우자의 경우 설명변수들이 경제활동 참가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제시한다.

〈표 III-8〉 경제활동참가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 여성배우자

설명변수	세후 근로소득	세후 비근로소득	6세 이하 자녀 수	7세~18세 자녀 수	부양 가족 수
한계효과 (dLFP/dx)	1.12%*	-0.46%*	-9.74%*	0.52%	2.37%

- 주: 1) 소득의 경우 단위는 1백만원임.
 2) 한계효과는 세후 근로소득이 1,570만원, 세후 비근로소득이 3,190만원, 6세 이하 자녀 수는 0명, 7세~18세 자녀 수는 1명, 부양가족 수는 1명에서 측정함.
 3) *는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여성배우자의 경우 (가상) 세후 근로소득이 1,570만원, 세후 비근로소득이 3,190만원, 6세 이하 자녀 수는 0명, 7세~18세 자녀 수는 1명, 부양가족 수는 1명인 상태에서 (가상) 세후 근로소득만이 1백만원 상승하면 경제활동 참가 확률이 1.12%p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한 상태에서 세후 비근로소득이 1백만원 상승하면 경제활동 참가 확률이 0.47%p 감소함을 나타낸다. 만약 주어진 상황에서 6세 이하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 증가하여 부양가족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는 경우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 참가 확률은 7.37%p(=9.74%p - 2.37%p) 감소하게 된다.

위에서 가정한 상태와 동일한 상태에 처한 가구의 여성배우자의 경우, (가상) 세후 근로소득이 1% 상승한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약 0.602에서 약 0.603로 0.292%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여성배우자의 경우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제활동참가율의 탄력성이 약 0.292임을 의미한다.

3.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소득세 과세단위의 결정은 결혼에 대한 중립성과 동일소득 부부에 대한 과세 형평성간의 선택문제라 할 수 있다. 소득세의 누진성을 포

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회에서 조세의 결혼 중립성과 부부간 수평적 형평성 중 어떠한 것이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이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간 수평적 과세 형평성을 추구하는 부부합산과세제도는 소득구성에 따라 혼인벌금 혹은 혼인보조금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경우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판정(2001헌바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 유지를 부부간 수평적 과세 형평성문제보다 중요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소득세가 개인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이론적 분석에서도 가구의 노동시간 변경, 배우자의 노동 참여 결정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소득증가에 따라 한계세율을 낮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부부의 결혼기간 내 형성된 재산권에 대해서는 소득의 주체에 관계없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어 일정부분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적 일관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법학적 분석과 함께 분석결과 제시되는 대안들에 대한 실증적 효과분석도 중요하다. 법적인 타당성 이외에 과세단위의 변경을 통해 개인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과세단위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시된 선택적 부부단위 합산분할과세(2분2승제)를 도입하게 되면 동 과세방법은 소득세의 누진도를 낮추게 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소득을 부부합산 및 분할과정을 통해 낮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맞벌이부부보다는 홑벌이부부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부합산분할과세는 부부의 평균소득을 과세소득을 간주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에 비해 홑벌이부부의 상대적 세부담 하락률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도입은 가구내 이차소득자인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가유인을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즉 개인단위 과세하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낮은 세율구간에서부터 세부담이 증가하나 부부단위 과세제도하에서는 부부의 평균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부터 적용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선택은 명실공히 부부재산공유제를 소득세제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선택적 2분2승제 과세단위로의 전환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2007) 원자료를 이용한다¹¹⁾. 가구별 자료를 통해 제도 변환이 야기하는 소득분포, 노동시장 변화 등을 분석한다. 특히 한계세율이 크게 높아지는 배우자의 노동공급 저해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가계조사자료 원자료는 매월 보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이 중 연간소득을 대표할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자료를 제출한 5,117가구의 부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10개월 이상의 자료를 보고한 경우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이유는 각종 보너스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득의 분기별 변동을 일정부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5,117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수는 8,741명으로 가구당 평균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주와 배우자 중 남성의 고용률은 89.7%이며 여성은 59.2%로 총 가구주와 배우자의 고용률은 73.5%에 이르고 있다. 이를 가구주와 배우자로 나누어 보면 가구주의 고용률은 90.8%이며 배우자는 49.2%로 가구 내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 중 남성의 비율은 72.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

11) 제2절의 노동시장 참가율 탄력성의 추정과 달리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것은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패널자료의 특성상 초기 샘플설계에서 자료의 탈락(Attrition)이 20% 이상 발생하여 대표성 측면에서 가계 조사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담이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배우자 중 남성의 비중은 11.6%에 달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이 엄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 가구 내 역할에 따른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이 가구주일 때 고용률은 94.3%로 여성 가구주 고용률 81.7%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이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고용률이 49.3%로 여성 배우자의 49.2%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가구주로서의 역할 수행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III-9〉 분석대상 가구 부부의 구성 및 경제활동

(단위: 명, %)

	가구주	배우자	합계
남성합계	3,690	422	4,112
근로남성	3,480	208	3,688
비근로남성	210	214	424
고용률	0.943	0.493	0.897
여성합계	1,427	3,202	4,629
근로여성	1,166	1,574	2,740
비근로여성	261	1,628	1,889
고용률	0.817	0.492	0.592
합계	5,117	3,624	8,741
근로	4,646	1,782	6,428
비근로	471	1,842	2,313
고용률	0.908	0.492	0.735

분석대상 5,117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을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은 고령가구이며 가구규모가 적은 실정이다. 저소득층의 가구규모가 적은 것은 부분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소득 10분위의 평균 부부인원 수 1.96명에 비해 1분위는 훨씬 낮은

I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31

1.3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가구규모 대비 취업인원수의 비율¹¹²⁾은 10분위의 경우 46.0%에 불과하나 1분위의 경우 61.6%로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층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한편 부부소득에서 차지하는 배우자 소득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낮아지며 4분위 이하 계층은 5~7%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저소득층일수록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III-10〉 분석대상 가구의 기초통계량

(단위: 명, 천원, %)

분위수	가구주 연령	가구 규모	취업 가구원 수	부부 인원 수	부부 소득	배우자 소득	배우자 소득 비중
10	44.4	3.57	1.64	1.96	74,823	15,090	20.2
9	43.1	3.66	1.59	1.95	49,108	7,085	14.4
8	42.6	3.53	1.61	1.93	38,585	5,666	14.7
7	43.0	3.38	1.57	1.87	31,128	4,221	13.6
6	43.6	3.20	1.58	1.81	25,056	2,985	11.9
5	45.0	2.99	1.50	1.71	19,188	1,982	10.3
4	49.5	2.71	1.46	1.59	13,251	879	6.6
3	54.5	2.36	1.32	1.48	7,248	362	5.0
2	66.1	1.87	1.12	1.44	1,052	83	7.9
1	63.5	1.84	1.13	1.35	1	0	0.0
평균	49.5	2.91	1.50	1.71	25,959	3,838	14.8

112) 소득10분위별 가구규모대비 취업인원수의 비율(%)

분위	10	9	8	7	6	5	4	3	2	1	평균
취업률	46.0	43.5	45.6	46.4	49.3	50.0	54.0	55.8	60.0	61.6	51.6

가. 선택적 2분2승제로의 제도 변경 효과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은 부부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과세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미국의 제도와 유사한 방안이다. 미국의 경우, 개별 신고 시와 부부합산 신고 시 소득세 과세구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과세구간의 변동은 고려치 않는다. 세수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는 과세구간의 변동 혹은 세율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우선 세율 변동이 없는 경우를 분석하고 다음절에서 세율의 변동을 통한 세수증립적 방안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분석을 위해 다음을 가정한다. 부부의 소득세 부담 산출을 위해 고려되는 공제는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하였으며 특별공제로는 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기타 보험료 공제를 적용한다. 100만원을 제공하는 표준공제와의 비교 선택을 위해 특별공제와 표준공제를 그 규모에 따라 선택하게 하였다.

사회보장부담의 일종인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 징수방법이 달라지는데 본 분석에서는 부부합산 신고 시에도 개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부부합산 과세를 취할 경우 부부소득 중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기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사업소득에는 보험료 부담이 없게 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부부의 경우, 자산 등을 고려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보장보험료 징수 가정의 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에 비해 근로소득이 없는 부부의 사회보험부담률이 낮게 나타나게 되나 이는 실제 부담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개인단위 과세에 비해 부부단위 과세의 경우 사회보장부담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부부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만 사회보장

부담이 부과되고 사업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행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의 경로를 모두 고려하였다. 즉 노동시간의 변화(intensive margin)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extensive margin)를 동시에 감안하였다. 노동공급 행태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은 세후소득에 대한 노동공급 탄력성을 개인이 직면하는 세율 변화에 적용함으로써 반영될 수 있다.

우선 세율 변화에 대한 노동시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성별에 따른 구분된 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하는 김현숙(2007)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였으며 노동시장 참여율에 대한 영향은 앞 장에서 추정된 결과를 이용한다. 김현숙(2007)은 노동패널 2004년 자료를 분석하여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은 0.0629, 남성은 0.0095로 추정하였다. 동 추정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파트타임 일자리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수치라 판단된다. 한편 노동시장 참가율 탄력성은 앞 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성은 0.085, 여성은 0.292로 가정한다. 남성의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의 탄력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가구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동시장 참가가 임금수준과 큰 상관관계 없이 이루어진다는 직관과 일치한다. 반면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을 향유함으로써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입이 임금수준에 민감하다는 기대와 부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단위 소득세제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비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소득세 부담이다. 즉 개인단위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제가 부부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은 부부단위 과세로 전환 시 이전의 44.98%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며 사회보장 부담은 95.4%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사회보장부담의 하락은 부부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 사업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 및 세액 변동은 세율 변화에 따른 노동시간(intensive

margin) 변동과 경제활동 참가율(extensive margin)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과 배우자소득은 한계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감소로 각각 0.18%p, 0.33%p 감소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탄력성을 보이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배우자의 소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소득세 부담은 부부단위 과세와 함께 다른 세제를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44.6%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행태 변화의 고려 여부가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 및 노동공급탄력성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노동공급탄력성이 높은 여성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분석자료에서 나타나는 부부 중 남성의 평균소득은 27.4백만원이나 여성은 11.6백만원으로 남성의 42.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동 평균소득은 노동시간의 차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금률의 차이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표 III-11〉 선택적 2분2승제에 따른 소득 및 세부담 변화

(단위: %)

시나리오	총 소득	배우자소득	소득세	보험료
개인단위	100.00	100.00	100.00	100.00
부부단위				
행태 변화 없음	100.00	100.00	44.98	95.40
노동시간 변동	100.03	100.03	45.05	95.42
노동시간+참여율	99.82	99.67	44.57	95.37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경이 야기하는 노동시간 변화효과와 노동시장 참가율 변화효과와 상대적 크기는 노동시장 참가율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탄력성 수준의 차이에서 예상할 수 있다. 행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노동시간 변화효과는 배우자 소득을

I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35

0.03%p 상승시키는 데 불과하나 노동시장 참가율 변화효과는 -0.36%p에 이른다.

소득세 부담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인단위 과세에 비해 부부단위의 세부담률이 크게 하락한다. 평균적인 세부담률이 개인단위 과세시 4.84%수준에서 부부단위로 변경할 경우 2.16%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행태 변화에 기인한다기보다 2분2승제로 제도를 변경함에도 기타 소득세제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한계세율의 하락에 원인이 있다. 즉 누진적인 세제하에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2분2승제는 한계세율을 낮추어주므로 부부전체의 세부담을 낮아지게 한다. 전반적으로 노동시간 변동효과와 노동시장 참여율 효과는 낮은 탄력성과 낮은 여성 소득수준으로 인해 제한적이며 상대적으로는 노동시간 변동효과보다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표 III-12〉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변화

(단위: 백만원, %)

	총소득	총소득세액	유효세율
개인단위	132,833	6,429	4.84
부부단위(행태 변화 없음)	132,833	2,892	2.18
부부단위(노동시간 변동)	132,879	2,896	2.18
부부단위(노동시간+참여율)	132,765	2,865	2.16

소득분위별 소득 변화율과 배우자의 소득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전반적으로 과세단위 변경이 야기하는 노동시장 참가자의 노동시간 변화효과는 부부소득을 0.03%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득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세율인하 폭과 노동공급탄력성이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큰 배

우자의 소득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의 소득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노동공급탄력성이 높은 배우자 소득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장 참가율 효과는 신규시장 진입시 한계세율을 높여 시장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 노동시간 변화효과와 노동시장 참가율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노동시장 참가율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는 두 효과를 모두 반영할 경우 전체 소득이 감소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중 전체소득의 감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주로 한계세율 변화에 더욱 민감한 여성이다.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소득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 참가율 효과를 포함할 경우 배우자 소득 비중은 개인 단위 선택 시보다 0.16%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거의 변화가 없는 근로 시간 효과(-0.01%)와 대조적이다.

Ⅲ.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37

〈표 III-13〉 부부소득 및 배우자소득 비율 변화

소득 분위	부부소득(천원)			배우자소득 비율(%)		
	형태 변화무	노동시간 변화	노동시간 +참여율	형태 변화무	노동시간 변화	노동시간 +참여율
10	74,823	74,863	74,660	20.17	20.17	20.10
9	49,108	49,127	49,027	14.43	14.42	14.38
8	38,585	38,597	38,521	14.68	14.68	14.76
7	31,128	31,136	31,069	13.56	13.56	13.52
6	25,056	25,062	25,006	11.91	11.91	11.99
5	19,188	19,191	19,161	10.33	10.33	10.21
4	13,251	13,252	13,240	6.64	6.64	6.66
3	7,248	7,248	7,244	5.00	5.00	4.96
2	1,052	1,052	1,052	7.93	7.93	7.93
1	1	1	1	0.00	0.00	0.00
평균	25,959	25,968	25,913	14.78	14.78	14.76
개인단위 대비 변화율(%)						
10	0.00	0.05	-0.22	0.00	-0.01	-0.31
9	0.00	0.04	-0.17	0.00	-0.02	-0.32
8	0.00	0.03	-0.16	0.00	-0.01	0.54
7	0.00	0.03	-0.19	0.00	-0.02	-0.31
6	0.00	0.02	-0.20	0.00	-0.01	0.66
5	0.00	0.02	-0.14	0.00	0.00	-1.18
4	0.00	0.01	-0.08	0.00	-0.01	0.42
3	0.00	0.00	-0.04	0.00	0.00	-0.82
2	0.00	0.00	0.00	0.00	0.00	0.00
1	0.00	0.00	0.00	0.00	-	-
평균	0.00	0.03	-0.18	0.00	-0.01	-0.16

평균소득세율은 개인단위 선택 시 4.8%에서 과세단위 변경에 따라 단순평균 기준 50.9% 하락한 2.4%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소득수준 별 평균세율 인하 비율은 구조적인 패턴을 발견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참가율의 변화를 반영하더라도 평균소득세율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가 결정의 변경도 낮은 소득비중으로 인해 부부가 직면하는 평균세율에의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I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39

〈표 III-14〉 평균소득세율과 사회보장기여율 변화

소득 분위	평균소득세율(%)			평균 사회보장기여율(%)		
	개인단위	노동시간 변화	노동시간 +참여율	개인단위	노동시간 변화	노동시간 +참여율
10	8.4	4.2	4.2	5.6	5.3	5.3
9	5.1	1.9	1.9	6.2	6.0	6.0
8	4.0	1.5	1.5	6.2	5.9	5.9
7	3.3	1.4	1.4	6.0	5.5	5.5
6	2.8	1.3	1.3	5.6	5.3	5.3
5	1.7	0.7	0.7	5.6	5.3	5.3
4	0.9	0.3	0.3	5.3	5.2	5.2
3	0.3	0.1	0.1	4.7	4.7	4.6
2	0.0	0.0	0.0	3.3	3.4	3.4
1	0.0	0.0	0.0	1.0	1.0	1.0
평균	4.8	2.4	2.4	5.8	5.5	5.5
개인단위 대비 변화율(%)						
10	0.0	-49.8	-50.1	0.0	-4.0	-3.8
9	0.0	-61.8	-62.5	0.0	-3.7	-3.4
8	0.0	-62.7	-63.2	0.0	-4.9	-4.7
7	0.0	-57.2	-56.7	0.0	-7.6	-7.8
6	0.0	-53.7	-55.0	0.0	-6.6	-6.2
5	0.0	-59.3	-58.1	0.0	-5.3	-5.4
4	0.0	-61.6	-62.6	0.0	-0.8	-0.5
3	0.0	-51.6	-51.0	0.0	-0.2	-0.5
2	0.0	-100.0	-100.0	0.0	2.0	2.0
1	0.0	-	-	0.0	0.0	0.0
평균	0.0	-50.7	-51.1	0.0	-4.6	-4.5

나. 세수중립적 과세단위 변경

과세단위 이외 조세제도의 변경이 없을 경우 소득세수는 크게 감소하므로 이의 보완이 없는 제도변경은 가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세수중립적 과세단위 변경을 검토하고 이 경우 나타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세수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는 소득세율, 과표구간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율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세수중립적 소득세율은 현재 소득세율의 213.6% 수준으로 나타난다. 부부단위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 소득의 한계세율이 개인단위 과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2배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함을 보여준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가구소득 및 배우자 소득의 변화 폭은 과세단위 변경시 보다 크게 나타나나 그 절대값은 미미한 수준이다.

소득세율 인상은 경제활동 참가자들의 근로시간 및 경제활동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높은 면세점 수준(즉 낮은 실효세율), 낮은 탄력성 등으로 인해 소득 변화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표 III-15〉 세수중립적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소득 및 세부담 변화

(단위: %)

시나리오	총 소득	배우자소득	소득세	보험료
개인단위	100.00	100.00	100.00	100.00
부부단위	99.82	99.67	44.57	95.37
부부단위(세수중립)	99.71	99.34	100.00	95.32

과세단위 변경과 세수중립 조건을 부과하였을 때 전반적인 평균소득세율은 개인단위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중

I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41

립적 과세단위 변경 시 평균소득세율은 5.32%로 개인단위하에서 4.84%보다 0.48%p 높아진 수준이다. 이러한 세율인상은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가율 하락에 따라 과세기반이 축소됨에 따른 효과이다. 즉 총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제도 변경 이전과 동일한 세율을 조달하기 위한 세율은 이전보다 높아지게 된다.

〈표 III-16〉 세수중립적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변화

(단위: 백만원, %)

	총소득	총소득세액	유효세율
개인단위	132,833	6,429	4.84
부부단위(노동시간+참여율)	132,599	2,865	2.37
부부단위(노동변화+세수중립)	132,448	6,429	5.32

세수중립적 과세단위 변경을 추진할 경우, 계층별 소득수준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감소율은 전반적으로 중상위 계층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10분위 소득감소율은 0.4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참가 결정에 민감한 여성의 소득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계층별 소득세 부담 변화는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지 않는다. 10분위 계층의 세부담의 경우, 과세단위 변경에 따라 개인단위 선택시보다 세부담이 높아지는데 이는 과세단위 변경에 따라 많은 가구가 면세점 이하 가구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세부담 계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누진소득세율로 이루어진 소득세율 체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가구의 세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9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는데 이는 과세단위변경으로 인한 한계세율 인하효과가 평균적인 세율 인상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단위에서 부부단위로의 과세단위 변경은 소득10분위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다른 분위

들의 세부담은 소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표 III-17〉 세수증립 과세단위 변경시 소득수준과 평균세율 변화

소득 분위	부부소득(천원)			평균소득세율(%)		
	개인단위	부부단위	부부 (세수증립)	개인단위	부부단위	부부 (세수증립)
10	74,823	74,660	74,478	8.4	4.2	9.7
9	49,108	49,027	48,983	5.1	1.9	4.2
8	38,585	38,521	38,496	4.0	1.5	3.2
7	31,128	31,069	31,048	3.3	1.4	3.2
6	25,056	25,006	24,991	2.8	1.3	2.7
5	19,188	19,161	19,155	1.7	0.7	1.6
4	13,251	13,240	13,238	0.9	0.3	0.7
3	7,248	7,244	7,244	0.3	0.1	0.3
2	1,052	1,052	1,052	0.0	0.0	0.0
1	1	1	1	0.0	0.0	0.0
평균	25,959	25,913	25,884	4.8	2.4	5.3
개인단위 대비 변화율(%)						
10	0.0	-0.22	-0.46	0.0	-50.1	14.6
9	0.0	-0.17	-0.25	0.0	-62.5	-17.5
8	0.0	-0.16	-0.23	0.0	-63.2	-19.9
7	0.0	-0.19	-0.26	0.0	-56.7	-5.1
6	0.0	-0.20	-0.26	0.0	-55.0	-4.0
5	0.0	-0.14	-0.17	0.0	-58.1	-8.7
4	0.0	-0.08	-0.09	0.0	-62.6	-19.3
3	0.0	-0.04	-0.05	0.0	-51.0	4.2
2	0.0	0.00	0.00	0.0	-100.0	-100.0
1	0.0	0.00	0.00	0.0	-	-
평균	0.0	-0.18	-0.29	0.0	-51.1	9.8

III.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43

이러한 사실은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지니계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니계수는 개인단위 선택 시보다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단위 과세를 통해 전반적인 평균소득이 낮아져 감소한 세수를 누진적 세율구조를 통해 고소득층 중심으로 보전하여 소득세의 재분배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그 효과의 크기는 제한적이다. 한편 세수중립성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를 소폭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평균소득기준 과세로 인한 한계세율의 하락폭이 개인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III-18〉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개인단위	부부단위	부부단위(세수중립)
지니계수	0.41819	0.42403	0.41648

4. 소결

과세단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은 개인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부부 혹은 가족에 대한 최적과세방법에 대한 고찰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전형적인 노동시장 참가패턴을 이용한 최적과세론적 접근으로 부부 중 일차소득자와 이차소득자의 행태를 현실적으로 가정할 경우, 이차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야 함을 보였다(Brewer, Saez, and Shephard: 2007). 이러한 결과는 개인 혹은 부부 등 선택 가능한 소득 과세단위 중 어떠한 것도 최적과세와 일치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부부합산누진과세보다는 중립적인 개인단위 과세가 최적에 가까운 방안임을 시사해 준다. 국제적인 정책 현실에서도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낮을 경우 이차소득자의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

아 최적과세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법체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선택가능한 선택적 2분2승제의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가능한 정책 대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변경의 득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과세단위 변경 시 발생가능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영향분석은 개인의 노동공급 결정과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조세 및 소득 관련 변화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개인(혹은 부부)의 노동공급 결정이 중요한 것은 과세단위가 변경됨으로 인해 개인이 직면하는 한계세율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노동시간의 변화보다는 노동시장 참가 결정이 중요함을 반영하여 노동시간의 탄력성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노동시장 참가율 탄력성은 한국노동패널 8~9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철인(2006)과 Leuthold(1984)의 모형에 따라 남성가구의 경우 일차적인 근로소득자(primary income earners)로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가행위는 여성배우자의 노동시장 참가 행위 및 그 결과인 여성배우자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여성배우자는 가구 내에서 이차적인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가구 전체의 비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남성가구의 근로소득에도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Heckman이 제시한 2단계 추정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가구의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탄력성이 약 0.0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배우자의 경우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탄력성이 약 0.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내 부부의 경제적 역할이 남성이 대부분인 가구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통계와도 일치한다.

탄력성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선택적 2분2승제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택적 2분2승제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의 한계세율이 높아지기는 하나 전반적인 가구소득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할 경우 조금 더 낮아지게 되나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세수중립성을 가정할 경우, 가구세전소득은 개인단위하에서의 99.71% 수준에 이른다.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세율인상으로 보전할 경우 필요한 소득세율은 현재 소득세율의 213.6%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부단위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 소득의 한계세율이 개인단위 과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2배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함을 보여준다. 과세단위 변경으로 부부가 부담하는 평균 소득세율은 5.32%로 개인단위하에서 4.84%보다 0.48%p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세율인상은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가율 하락에 따라 과세기반 축소와 평균소득 기준과세로 인한 면세자 계층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즉 총과세대상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제도 변경 이전과 동일한 세율을 조달하기 위한 세율은 이전보다 높아지게 된 것이다.

계층별 소득감소율은 전반적으로 중상위 계층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10분위의 소득감소율이 0.4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참가 결정이 민감한 여성의 소득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계층별 소득세 부담 변화는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지 않는데, 소득10분위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다른 분위들의 세부담은 소폭 감소하게 된다. 10분위 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과세단위 변경에 따라 개인단위 선택 시보다 세부담이 높아지는데 이는 과세단위 변경에 따라 많은 가구가 면세점 이하 가구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세부담 계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9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는데 이는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한계세율 인하효과가 평균적인 세율 인상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니계수도 소폭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개인단위 경우 지니계수는 0.41819에서 변경시 0.41648로 개선된다.

전반적으로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가유인의 하락으로

세율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조세/보조금 이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정책 대상 자연인을 독립된 개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비와 지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우리나라 법률체제(소득과세 포함)에서도 반영되었다. 비록 전반적인 소득과세는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부부로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과세단위의 차이는 세부담 능력의 반영, 조세회피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지만 법적 일관성과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부부간 자산이동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2001헌바82)과 종합부동산의 세대단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판정(2006헌바112)은 개인단위 소득세제에서 조세부담 회피 방지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부(혹은 세대)를 과세단위로 하는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 일관성과 조세회피 방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세단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현행 개인단위 소득과세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1항),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헌법 제17조) 조항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법상의 부부재산제도인 부부별산제와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즉 민법상 허용하는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본질이 부부간의 공유재산의 분할에 해당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도 관계가 없다는, 따라서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³⁾. 이러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입장 차이는 법률의 일관성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동업기업과 세특례제도와 공동사업과세제도의 경우 개인단위 소득세제에서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회피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가족간에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민법상의 조합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 혹은 공동사업과세제도를 적용받음으로써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피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조세회피의 문제는 각종 과징금 부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 추정규정 등을 이용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과세단위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과세단위의 조정을 통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행정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민법상 재산 분할청구권과의 조화를 피하면서 자산의 명의 분산,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 혹은 공동사업과세제도 등을 통한 소득세 부담회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법학적 분석을 통해 선택될 수 있는 대안은 선택적²분²승제의 도입으로 나타났다. 동 방안은 민법상 부부재산제뿐만 아니라 기존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개인비밀 및 자유보장 조항과도 부합되며 부부간 재산분산을 통한 조세회피 유인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과세단위의 선택은 법적인 일관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특정과세 단위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전환하는 것은 개인 및 부부의 경제행위 변동과 이에 따른 세수의 급격한 변화, 소득세 재분배 기능의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단위 변경에 관련해서 노동

113) 헌법재판소 1997년 10월 30일 96헌바14결정. 동 결정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이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아 증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 세수 변화 규모, 대응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최적조세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부부에 대한 과세방법은 다양하지만 일관된 견해를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가정 내 생산물의 가치를 반영하느냐 혹은 일차소득자와 이차소득자의 한계세율비율이 어느 수준인가 등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Brewer, Saez, and Shephard(2007)는 부부 중 일차소득자와 이차소득자의 행태를 현실적으로 가정할 경우, 이차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야 함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일차소득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아야 함을 증명하였다. 이는 맞벌이 부부로부터 홀벌이부부의 재분배 가치는 이차소득자의 가구 내 기여도가 큰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분배의 가치를 고려한 이차소득자에 대한 과세수준은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 결과는 선택 가능한 소득 과세단위는 최적과세와 일치하지 않으나 부부합산 누진과세보다는 중립적인 개인단위 과세가 최적에 가까운 방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서는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낮을 경우 이차소득자의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최적과세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이 부부(혹은 가구)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또한 소득증가에 따라 지원금액의 점진적 축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08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제도가 이러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예가 될 수 있다. 소득증가에 따른 지원금액의 점진적 축소는 이차소득자에 대한 암묵적 조세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일차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나타나게 되어 이론적으로 도출한 최적조세구조와 부합한다. 이 경우 개인단위와 부부단위를 혼합하여 제도를 운영한다는 법적 일관성의 한계는 존재한다.

법체계의 일관성과 최적과세를 위한 과세단위의 혼합을 피할 수 없

다면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선택적 2분2승제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능한 정책 대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변경의 득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과세단위 변경 시 발생가능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단위와 관련한 중요한 경제적 분석대상은 개인(혹은 부부)의 노동공급 결정이다. 과세단위가 변경됨으로 인해 개인이 직면하는 한계세율이 변화하게 되어 노동시장 참가 및 노동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노동시간의 변화보다는 노동시장 참가 결정이 중요함을 반영하여 노동시간의 탄력성은 이전 연구결과를 이용하였으며 노동시장 참가율 탄력성은 한국노동패널 8~9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남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 참가 확률의 탄력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철인(2006)과 Leuthold(1984)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노동시장참가 모형'을 사용하였다. 동 모형에 따르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일차적인 근로소득자(primary income earners)로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가행위는 여성배우자의 노동시장 참가행위 및 그 결과인 여성배우자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여성배우자는 가구 내에서 이차적인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가구 전체의 비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남성가구주의 근로소득에도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계량경제학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들의 경우 근로소득변수를 관찰할 수 없다. 둘째, 참여한 개인들의 경우에도 소득변수에 측정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계량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 방법론을 좇아 Heckman이 제시한 2단계 추정법을 통해 개인들의 근로소득을 추정함으로써 앞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 및 가구구성이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평균과 유사한 평균적인 가구¹¹⁴⁾의 경우 남성가구주의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탄력성이 약 0.0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배우자의 경우 세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탄력성이 약 0.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결과를 이용하여 선택적 2분2승제 도입의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택적 2분2승제하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의 한계세율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할 경우 조금 더 낮아지게 되나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세수중립성을 가정할 경우, 가구 세전소득은 개인단위하에서의 99.71% 수준에 이른다.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세율인상으로 보전할 경우 필요한 소득세율은 현재 소득세율의 213.6%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부단위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 소득의 한계세율이 개인단위 과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2배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함을 보여준다. 과세단위 변경으로 부부가 부담하는 평균소득세율은 5.32%로 개인단위하에서 4.84%보다 0.48%p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세율인상은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가율 하락에 따라 과세기반 축소와 평균소득 기준과세로 인한 면세자 계층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즉 총과세대상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제도 변경 이전과 동일한 세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율은 이전보다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제도 변경으로 계층별 소득수준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4) 평균적인 가구란 <표 III-2>에서 제시된 분석대상 가구의 평균값과 유사한 경제상태 및 가구구성을 가진 가구를 의미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가구주가 직면한 세후 근로소득 제의(offer)는 2,970만원, 여성배우자가 직면한 세후 근로소득 제의(offer)는 1,570만원, 가구의 세후 비근로소득은 220만원, 6세 이하 자녀 수는 0명, 7세~18세 자녀 수는 1명, 부양가족 수는 1명인 경우를 평균적인 가구로 전제하였다.

소득감소율은 전반적으로 중상위 계층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10분위의 소득감소율이 0.4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참가 결정이 민감한 여성의 소득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계층별 소득세 부담변화는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지 않는다. 소득10분위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다른 분위들의 세부담은 소폭 감소하게 된다. 10분위 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과세단위 변경에 따라 개인단위 선택 시보다 세부담이 높아지는데 이는 과세단위 변경에 따라 많은 가구가 면세점 이하 가구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세부담 계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누진소득세율로 이루어진 소득세율 체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가구의 세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9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는데 이는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한계세율 인하효과가 평균적인 세율인 상호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니계수도 소폭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개인단위의 경우 지니계수는 0.41819에서 변경 시 0.41648로 개선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개인단위 과세는 헌법, 민법 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 등에서 이견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과 납세자의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혹은 가구)단위 과세의 유용성도 잘 알려져 있다. 현실적 제도운영 상황도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혹은 가구)단위 제도의 혼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적조세론의 결과와도 잘 부합한다. 이러한 과세/지원 제도의 불일치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동 방안을 도입할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인해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미미하게 감소하며 소득세의 재분배기능은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기적으로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낮은 노동공급탄력성으로 인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세단위의 변경으로 향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라는 정부정책의 효과

성을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다. 장기성장을 위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은 오랫동안 미국의 소득세제상 과제인 혼인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현재 근로자의 낮은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과세단위 변경 효과가 크지 않게 나타났지만, 탄력성의 변화 가능성 등도 존재하여 향후 과세단위 변경의 역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과세단위 문제는 기존의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문제는 실질귀속의 원칙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가구단위 고려 문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 재산분산에 따른 조세회피 등의 문제는 과세단위의 변경보다는 증여추정 등 기존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하는 과세단위 변경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 김완석, 『소득세의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부단위합산분할
주의 선택과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 김주수, 『주석민법[친족(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 _____ ·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 나성린 · 남재량 · 문춘걸,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제7권, 한국재정학회, 2002.
- 노영훈, 『부부자산합산과세의 위헌결정과 미국의 혼인세 논쟁』, 『재
정포럼』, 11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이승우, 『부부재산계약』, 『가족법연구』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1989.
- 이철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2권 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6.
- 吉良實, 「課稅單位-2分2乘方式」, 『租稅判例百選』 第3版, 有斐閣,
1992.
- 金子宏, 『租稅法』, 弘文館, 2008.
- 北野弘久, 「所得稅法における夫婦課稅違憲論に對する判例」, 『稅法
學』 109號.
- 林宏昭, 「所得稅制の抜本改正のあり方」, 『稅經通信』 2005. 3月.
- 木村弘之亮, 「總論: 平等原則と配偶者課稅」, 『家族と稅制』, 弘文
堂, 1998.
- 山田二郎, 『實務 租稅法講義-憲法と租稅法-』, 民事法研究會, 2005.
- 三木義一, 「資産所得合算課稅制度の合憲性」, 『租稅判例百選』(第2

- 版) 別冊 ジュリスト No. 79, 有斐閣, 1983.
- 佐藤義彦, 「財産分與と離婚慰謝料の關係」, 『判例タイムズ』(747호, 1990. 3. 20), 1990a.
- _____, 「財産分與の性質」, 『判例タイムズ』(747호, 1990. 3. 20), 1990b.
- 竹内進, 「親族所得と租稅制度」, 『稅法學』 第553號, 日本稅法學會, 2005.
- 竹下重人, 「讓渡所得-慰藉料及び財産分與」, 『租稅判例百選』(第二版), 別冊ジュリスト(第79卷), 有斐閣, 1983. 3.
- 石井健吾, 「財産分割としての不動産の讓渡と讓渡所得課稅」, 『法曹時報』(第5卷15號), 財團法人 法曹會, 1978.10.
- 岩崎政明, 하이POSETEICAL·스타데이租稅法, 『弘文堂』, 2006.
- 遠藤みち, 「日本の裁判例にみる夫婦財産制と租稅法」, 『家族と稅制』, 弘文堂, 1998.
- 佐藤義彦, 「財産分與と離婚慰謝料の關係」, 『判例タイムズ』(747호, 1990. 3. 20), 1990.
- Bittker, Boris I., "Federal Income Taxation and the Family," 27 *Stanford Law Review*, 1975, pp. 1389~1463.
- Boskin, M. J., "Optimal Tax Treatment of the Family," Memo 143, *Center for Research in Economic Growth*, Stansford University, 1973.
- _____ and Sheshinsky, E., "Optimal Tax Treatment of the Family-Married coupl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 1983, pp. 281~297.
- Brewer, Saez, and Shephard, "Optimal Household Labor Income Tax and Transfer Programs: An Applcation to the UK," mimeo, 2007.

- Cretney, Stephan, *Principle of Family Law*, Sweet & Maxwell, 1997.
- Gann, P. B., "Abandoning Marital Status as a Factor in Allocating Income Tax Burden," *Texas Law Review*, 59, 1980.
- Hesse, Konrad, *Grundzüge der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 Aufl, 1993.
- Kaplow, Louis, "Optimal Distribution and Taxation of the Family," NBER Working paper No. 4189, NBER, 1992.
- Kleven, Kreiner, and Saez, "The optimal Income Taxation of Couples," mimeo, 2008.
- Lenski, Edgar, *Vertragsgestaltungen zwischen Ehegatten und ihre steuerrechtlichen Auswirkungen bei der getrennte Veranlagung*, *BB* 1957.
- Leuthold, J. H., "Income Splitting and Women's Labor-Force Participati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8, No. 1, 1984, pp. 98~105.
- Masui, Y. and Nakazato, M., "Personal Income Taxation," University of Tokyo, mimeo, 1999.
- McCaffery, Edward J., "Taxation and the Family: A Fresh Look at Behavioral Gender Biases in the Code," 40 *UCLA Law Review*, 1993, pp. 983~1060.
- Meinke, Jens Peter,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14. Aufl., Verlag C. H. Beck, 2004.
- Mellinghoff, Rudolf, "Verfassungsrechtliche Maßstäbe für die Besteuerung von Ehe und Familie," *Grundrechtsschutz im Steuerrecht*, C.F.Müller Verlag, 2001.
- Oldman, Oliver and Temple, Ralp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 Taxation of Married Persons,” 12 *Stanford Law Review*, 1960, pp. 585~605.
- Piggott and Whalley, “Tax unit and Household Production,” NBER Working Paper No. 4820, NBER, 1994.
- Schmidt, Ludwig, *Einkommensteuergesetz Kommentar*, 20. Aufl., Verlag C. H. Beck, 2006.
- Teresa, Maria and Soler Roch, *Family Taxation in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Ltd, 1999.
- Tiedtke, Klaus, Grundstückerwerb von Ehegatten in Gütergemeinschaft, FamRZ 1979.
- Tipke, Klaus and Joachim Lang, *Steuerrecht*, Ein systematischer Grundriß, 13. Aufl., Verlag Dr. Otto Schmidt KG, 1991.
- Wooldridge, J. 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2002.

부 록

〈부표 1〉 OECD국가들의 근로소득 과세단위(2006~2007)

개인단위 과세	부부합산 과세	가구합산 과세
Australia Austria Belgium ¹⁾ Canada Czech Republic ²⁾ Denmark Finland Greece Hungary Iceland ³⁾ Italy Japan Korea Mexico Netherlands ⁴⁾ New Zealand Slovak Sweden Turkey United Kingdom	Germany ⁵⁾ Ireland ⁵⁾ Luxembourg ⁷⁾ Switzerland ⁷⁾ United States ⁵⁾	France Norway ⁶⁾ Portugal Spain ⁸⁾

- 주: 1) 기본적으로 개인단위 과세이나 부부의 경우 joint filing 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이 없더라도 30%까지 소득이전 가능
- 2) 자녀가 있을 때는 부부 joint filing을 선택할 수 있음.
- 3) 자본소득(capital income)은 joint taxation
- 4) 개인단위이나 자가 주택 혹은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은 소득은 부부간의 자유로운 배분 가능
- 5) Joint filing을 선택할 수 있음
- 6) 편부모의 경우 joint taxation을 하여야 하며 17세 이하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같이 과세됨
- 7) 자녀의 근로소득은 가족단위 과세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과세
- 8) 가족에 대한 과세는 가족전체에 대한 joint filing과 가구주에 대한 신고 중 선택가능

자료: OECD, Taxing wages, 2007.

〈부록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요약문 (2006헌바112)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 및 제청신청인은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5년분 또는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납부 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위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또는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하고, 앞서 본 '구 종합부동산세법'과 합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각각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 관련규정에 대해서만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2008헌가12 위헌심판 제청을 하고 나머지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이 사건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바62,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2007헌바88·94, 2008헌바3 헌법소원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사건(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바6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사건(2007헌바88·94, 2008헌바3, 2008헌가12)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 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여기에서는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고,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 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제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외하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율〉

5억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10

5억 5천만원 초과 45억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0

45억 5천만원 초과 1,000분의 30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율〉

7억원 이하 1,000분의 10

7억원 초과 47억 원 이하 1,000분의 20

47억원 초과 1,000분의 40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

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

(1)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소급입법 과세의 문제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3)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 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자치재정권 침해의 문제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되고, 입법정책상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여기에서도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헌법 제119조 위반의 문제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6)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의 문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 입법권 남용의 문제

조세 관련 법률이라 하여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인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40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 하여 이를 들어 입법권의 남용이라 하기도 어렵다.

나. 세대별 합산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 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

공할 수 있으나, 가족간의 증여를 통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당위성도 없으며, 부동산 가격의 양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세제의 불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선언한바 있으므로 적절한 차별취급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상의 명의신탁 무효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 추정규정 등에 의해서도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방지 등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경제생활 단위별 과세의 실현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 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1)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궁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인구, 세대 중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1인당 또는 1세대당 평균세액, 세액 단계별 납세자 및 납세액의 분포,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직전년도 총세액 부담액에 대한 150% 내지 300%의 세액 상한의 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이고, 위 가격 대비 부담률에 비추어 보면,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택분 및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입법제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하여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자를 정책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보다 엄격한 헌법적 심사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 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은, 매년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가 반복적으로 부과되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의 정도 및 주택과는 또 다른 토지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장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양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 밖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1)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여부

①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②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할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더라도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며, ③ 종합부동산세 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하여 이를 들어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비하여 차별한다고 할 수는 없고, ④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의 경우에는 6억 내지 9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의 경우에는 3억 내지 6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바, 위 과세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 여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특조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산권의 제한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과세표준이 감액 평가됨으로써 일반토지와 비교할 때 감액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에 더하여 다른 일반토지와 같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 다른 일반토지에 비하여 특별히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일정한 경우에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납세의 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 사건 위헌 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존속시킬 때 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위헌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고, 특히 일률적·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 규정에 있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김종대) 요지

가. 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한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합헌의견

(1)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종합부동산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세율이 조세정책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 제7조 제1항(개정 법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 제외) 및 세율에 관한 제9조 전단(개정 법 제9조 제1,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과는 '주택의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법 제8조(개정 법 제8조 제1항, 과세표준)가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1)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은 국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이고, 부동산 투기억제나 부동산 가격안정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장기보유 여부나 보유목적의 투기성 여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의 과세 여부나 과세 범위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주거목적으로 보유하는 1주택의 경우에 장기보유 여부나 다른 재산·소득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별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조세정책적 결정이고,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부담능력을 잘못 파악하였다거나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

(1)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에 관해 보건대,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 이 같은 과세목적물인 주택의 특성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개인별로 과세 않고 이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 보건대, 주거목적의 1주택이라고 해도 고가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가액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그 부담 정도 역시 선진제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혹 납세의무자에 따라서는 극소수자에게만 부과시키는 과도한 세금이라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상 문제점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은 점과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는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이외에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의 억제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보유기간이나 조세지불능력을 고려한 과세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 8. 29.과 2005. 5. 26.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간 합산과세를 하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정당화 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결정(2001헌바82, 2004헌가6)을 선고한 바 있다.

6.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그 동안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그 중 세대별 합산과세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을 선언한 것이고,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지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일정한 경우에까지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그러한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한 것이다.

〈부록 2〉 가구과세에 대한 Kaplow (1992)의 접근

Kaplow(1992)는 개인과 가구의 세후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을 일치시키는 조건을 통하여 가구가 직면하는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여 평균적인 과세수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가구상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가구원간 소득 균등분할의 경우

모든 사람들의 효용의 합을 최대화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질 경우 각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구 내 개인효용의 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효용의 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효용을 일치시켜야 한다. 개인의 효용함수가 모두 동일하다면, 소득이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분배될 경우 총 효용은 최대가 된다. 즉 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과 각 가구원의 가처분소득이 동일하고 따라서 소득의 한계효용도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가 가구 내 소득분배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구 내에서 한계효용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게 될 수 있다.

가구원간 소득의 균등분할을 가정할 경우, 가구규모 n 이며 가구소득이 y 인 가구원과 개인 세후소득(y_I)은 동일하게 $\frac{1}{n}y$ 가 된다. 여기서 최적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비, 즉 $\frac{y_I}{y}$ 로 가구규모 n 일 경우에는 $\frac{1}{n}$ 를 θ 라 할 때, (2인 가구의 경우) $\theta > \frac{1}{2}$ 일 경우 동일하게 소득은 나눌 때보다 가구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는 가구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균등한 소득분배의 개인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증가를 통해 가구의 한계효용을 균등배분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theta < \frac{1}{2}$ 일 경우 가구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구원간 소득 불균등분할의 경우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간 균등하게 분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에 대한 과세상 취급이 균등하게 분할할 때보다 세부담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가구에 대한 과세도 가구원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와 같이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인한다. 즉 누진과세제도하에서 불균등 소득분할에 대해 개인별 과세를 적용할 경우 균등 소득분할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세율이 100%이거나 단일세율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의 의미는 크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인 가구로 가구 내 개인의 소득은 일정비중으로 주어지며 소득수준과 무관한 것($\frac{d\alpha}{dy} = 0$)으로 가정한다. α 는 첫 번째 가구원의 소득비중이며 $\frac{1}{2}$ 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가구의 총효용은 다음과 같다.

$$u_f = u(\alpha y) + u((1-\alpha)y) \quad (1)$$

사회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구와 개인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을 일치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구와 개인에 대한 적절한 세부담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alpha u'(\alpha y) + (1-\alpha)u'((1-\alpha)y) = u'(\theta y) \quad (2)$$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가구원의 가구소득 증가에 대한 한계 효용으로 실제 소득 1단위 증가에 대한 한계효용 $u'(\alpha y)$ 은 $u'\left(\frac{y}{2}\right)$ 보다 작다. 이는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소득에서 첫 번째 가구원의 소득배분 비중이 높아 한계효용의 비중은 높아진다.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가구원의 한계효용으로 소득 1단위 증가에 대해 $u'\left(\frac{y}{2}\right)$ 보다 높은 한계효용을 가지나 소득배분 비중이 낮다. 즉 좌측의 두 항은 1단위 소득 변화에 대한 한계효용으로 각각 $u'\left(\frac{y}{2}\right)$ 보다 크거나 작은 수준을 보여주나, 이에 적용되는 소득비중은 한계효용의 크기와 반대방향으로 작용하여 각 항이 $\frac{u'(\theta y)}{2}$ 보다 크거나 작게 된다.

α 가 1/2과 다른 값을 지니므로 식 (2)를 α 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frac{d^2 u_f}{d\alpha dy} &= u'(\alpha y) + \alpha y u''(\alpha y) - u'((1-\alpha)y) - (1-\alpha) y u''((1-\alpha)y) \quad (3) \\ &= u'(\alpha y)[1 - RRA(\alpha y)] - u'((1-\alpha)y)[1 - RRA((1-\alpha)y)] \end{aligned}$$

여기서 $RRA(x) = -xu''(x)/u'(x)$ 로서 소득수준 x 에서 상대적 위험회피도(relative risk aversion)를 나타낸다. 만약 RRA가 소득수준에 따라 변하지 않는 효용함수를 가정한다면 식 (3)은 $[u'(\alpha y) - u'((1-\alpha)y)](1 - RRA)$ 로 단순화된다. 첫 번째 항은 α 가 1/2보다 크므로 음수가 되고 두 번째항의 RRA가 1보다 크게 되면, 전체값이 양의 부호를 갖게 된다. 이제미분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식 (2)의 값이 $\alpha = \frac{1}{2}$ 일 때 보다 크게 되고 이는 우변에서 최적수준 값은 $\theta < \frac{1}{2}$ 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불균등한 소득배분이 있는 경우, 가구에 대한 과세를 균등한 소득배분의 경우보다 낮게 설정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즉 위험회피 정도가 높으면 불균등한 소득배분하에서 추가

적인 가구소득 증가의 혜택이 큼을 의미한다. 가구내 소득배분비율이 낮은 가구원의 경우에도 소득의 한계효용이 동일한 1인당 소득을 가진 개인보다 높아지게 된다.

또한 소득분배율이 소득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가구원에 대한 소득분배비율이 $\alpha(y)$ 라는 함수로 표현되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소득증가에 따라 첫 번째 가구원의 배분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를 상정한다. 한계효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식 (1)을 소득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left(\alpha + y \frac{d\alpha}{dy}\right) u'(\alpha y) + \left(1 - \alpha - y \frac{d\alpha}{dy}\right) u'((1-\alpha)y) = u'(\theta y) \quad (4)$$

여기서 $\frac{d\alpha}{dy} > 0$ 를 가정하므로 첫 번째 가구원은 식 (2)의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갖게 되고 두 번째 가구원은 비중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한계효용이 두 번째 가구원이 높으므로 전체적으로 가구의 한계효용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배분이 불균등하게 고정된 가구보다 세부담이 높아져야 함을 보여준다.

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절에서는 두 가구원의 소득배분이 균등하다고 가정한다. 가구소비에서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u_i(y) = u\left(\frac{\beta(y)}{2}\right)$ 여기서 $\beta(y) > y$. 즉 가구 내에서 소득 y 는 $\beta(y)$ 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규모의 경제를 선형함수로 가정하면, $\beta(y) = \beta y$, $\beta > 1$ 이며 효용함수 $u_i(y) = u\left(\frac{\beta y}{2}\right)$ 가 된다. 효용 최대화를 위해 가구와 개인에 대한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을 일치시키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ta u'\left(\frac{\beta y}{2}\right) = u'(\theta y) \quad (5)$$

동 조건은 두 가지 상반된 요인으로 인해 θ 가 1/2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첫째, 일계조건의 좌측항에서 가구 구성원의 한계효용은 1보다 큰 β 라는 가중치가 주어지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구의 한계효용이 소득증가만 고려한 한계효용보다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θ 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효용함수에 포함되는 $\frac{\beta}{2}$ 항목이다. 이는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효용이 개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도록 하므로 θ 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균형조건을 나타내는 θ 가 규모의 경제 수준(β)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식 (5)를 β 에 대해 미분하면,

$$\frac{d\theta}{d\beta} = \frac{-u'\left(\frac{\beta}{2}y\right)}{yu''(\theta y)} \left[RRA\left(\frac{\beta}{2}y\right) - 1 \right] \quad (6)$$

그러므로 $RRA\left(\frac{\beta}{2}y\right) > 1$ 이면 $\frac{d\theta}{d\beta}$ 는 양의 값을 갖게 된다. 즉 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가 높아지면 앞의 두 효과 중 두 번째 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theta > \frac{1}{2}$ 이 된다. 만약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중요하지 않게 되면 가구의 생산성이 중요하게 되어 $\theta < \frac{1}{2}$ 이 된다.

위험회피도가 1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만약 위험회피 정도가 소득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면 최적 θ 역시 소득에 따라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규모의 경제 효과를 선형이 아닌 일반적인 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용을 최대화하는 일계조건은

$$\beta' u' \left(\frac{\beta(y)}{2} \right) = u'(\theta y) \quad (7)$$

가구원의 한계효용에 대한 가중치는 β' 이 되며, 이는 한계 규모의 경제효과로 가구의 추가소득이 갖는 생산 측면의 편익이다. 가구원의 효용함수에 포함되는 총규모의 경제효과($\beta(y)$)는 한계효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규모의 경제가 소득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면, 한계효과(β')가 소득증가에 따라 총 효과($\beta(y)$)와의 격차가 커진다면 최적 θ 는 소득에 따라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 이타적 요인을 고려할 경우

가구 내에서 구성원간 이타적 요인이 존재할 경우 각 구성원의 효용함수는 다른 구성원의 효용이 포함되는 $u_i = u_i + \lambda_i u_j$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가구의 효용은 다음과 같다.

$$u_f = (1 + \lambda_2)u(\alpha_1 y) + (1 + \lambda_1)u(\alpha_2 y) \quad (8)$$

가구 구성원간 소득분배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성원간 균등분배, 두 번째는 가구효용(u_f)을 최대화시키는 분배, 마지막으로 한 구성원만 이타적이고 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소득분배의 경우, $\alpha_1 = \alpha_2 = \frac{1}{2}$ 가 되고 $\lambda = \lambda_1 + \lambda_2$ 라 한다면 가구효용 $u_f = (2 + \lambda)u\left(\frac{y}{2}\right)$ 이다. 효용최대화를 위한 일계조건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left(1 + \frac{\lambda}{2}\right) u' \left(\frac{y}{2} \right) = u'(\theta y) \quad (9)$$

이 경우 λ 가 양수이므로 $\theta < \frac{1}{2}$ 가 된다. 좌변의 $\left(1 + \frac{\lambda}{2}\right)$ 항은 가구가 이타적 효용함수로 인해 개인보다 효율적인 생산자임을 보여준다. 이타적 행위의 정도가 균형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계조건을 λ 에 대해 미분하면

$$\frac{d\theta}{d\lambda} = \frac{-\theta u'\left(\frac{y}{2}\right)}{2u'(\theta y)RRA(\theta y)} \quad (10)$$

우변항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이타적 요인이 강화될수록 가구의 생산성이 낮아지므로 조세부담은 개인에 비해 낮아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위험회피 정도가 커질수록 θ 의 변화폭이 작아지게 된다.

두 번째 소득분배는 가구효용을 최대화는 α_i 의 값을 선정하는 경우로 첫 번째 가구의 소득비중을 α 로 가정한다. 가구효용을 최대화하는 소득비중을 도출하기 위한 일계조건은

$$u'(\alpha y) = \frac{1 + \lambda_1}{1 + \lambda_2} u'((1 - \alpha)y) \quad (11)$$

이 된다. 이 결과를 사회효용의 최대화를 위해 추가소득에 대한 가구의 한계효용과 개인의 한계효용을 일치시키는 일계조건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 \lambda_2)u'(\alpha y) = u'(\theta y) \quad (12)$$

이타성의 정도에 따른 최적과세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식 (12)를 λ_2 에 대해 미분하고 식 (11)을 λ_2 에 대해 미분한 식을 대입하면

$$\frac{d\theta}{d\lambda_2} = \frac{-(1+\lambda_1)u''((1-\alpha)y)\frac{d\alpha}{d\lambda_2}}{u''(\theta y)} \quad (13)$$

이러한 결과는 λ_1 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위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frac{d\alpha}{d\lambda_2}$ 의 부호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식 (11)을 미분함으로써 양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¹¹⁵⁾. 그러므로 $\frac{d\theta}{d\lambda_2} < 0$ 이 성립한다. 즉 가구원간 이타성이 높아질수록 가구에 대한 세부담이 더 가벼워져야 한다. 특별한 경우로 $\lambda_2 = 0$ 이라면 식 (12)에서 $\alpha = \theta$ 가 성립하게 되어, 가구의 최적화를 위해 이타적 구성원의 소득비중을 변화시키는 정도는 사회적 최적화를 위해 가구 과세방법을 변화시키는 정도와 동일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

마지막 경우는 첫 번째 가구원만 이타적일 경우로 그는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소득비중 α 를 결정한다. 소득비중 α 를 결정하는 첫 번째 가구원의 효용 최대화 일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u'(\alpha y) = \lambda u'((1-\alpha)y) \quad (14)$$

사회의 효용 최대화를 위해 소득에 대한 가구의 한계효용¹¹⁶⁾과 개인의 한계효용 일치식에 식 (14)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15) 식 (11)을 λ_2 에 대해 미분하여 정리하면

$$\frac{d\alpha}{d\lambda_2} = \frac{-\frac{(1+\lambda_1)}{(1+\lambda_2)^2} u'((1-\alpha)y)}{yu''(\alpha y) + \frac{1+\lambda_1}{1+\lambda_2} yu''((1-\alpha)y)} > 0$$

116) 첫 번째 가구원이 자신의 효용 최대화를 위해 소득비중(α)을 결정하게 되므로 가구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은 소득의 변화를 통한 직접적 영향과 소득 변화가 첫 번째 가구원의 소득비중, 즉 $\alpha(y)$, 변화를 통한 간접 영향이 존재하게 된다.

$$\frac{1 + \lambda - \alpha - y \frac{d\alpha}{dy}}{\lambda} u'(\alpha y) = u'(\theta y) \quad (15)$$

우선, 균형식에서 $\lambda = 1$ 을 가정하면, 이는 첫 번째 가구원은 다른 가구의 효용을 자신의 효용과 동일하게 취급함을 의미한다. 이때 소득은 식 (14)에 의해 가구내에서 동일하게 배분될 것이며 식 (15)의 좌변항 계수는 1.5가 된다. 이는 $\lambda = 1$, $\alpha = 0.5$ 를 가정할 경우 $\frac{d\alpha}{dy} = 0$ 이 되기 때문에 식 (14)를 소득에 대해 미분하여 대입하면 도출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도출된 소득의 구성원간 균등배분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결과는 가구에 대한 과세를 균등배분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만약 λ 가 너무 작아서 식 (14)의 최적화 조건을 만족하는 내부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alpha = 1$ 이 된다. 사회적 효용의 최대화를 위해 가구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을 개인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과 일치시키는 것은 $u'(y) = u'(\theta y)$ 로 표현된다. 그 결과 $\theta = 1$ 이 된다.

마) 자녀에 대한 지출을 부모의 소비로 볼 경우

부모의 자녀로의 소득이전이 그러한 소비로부터 직접적인 효용을 얻는 경우로 가정할 수 있다. 우선 자녀에 대한 소비가 다른 소비와 같이 동일한 한계효용을 가져오고 소비의 편익이 합이 형태로 나누어지는(Additively separable)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가구효용은

$$u_f = u(y) + u(\alpha_2 y) \quad (16)$$

사회적 효용극대화를 위해 가구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과 개인의 한계효용을 다음과 같이 일치시켜야 한다.

$$u'(y) + \alpha_2 u'(\alpha_2 y) = u'(\theta y) \quad (17)$$

윗 식에서 $\theta < 1$ 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첫 번째 가구원이 개인의 경우보다 높은 효용을 가짐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alpha_2 = 1$ 라고 가정한다면 식 (17)의 좌변항은 $2u'(y)$ 가 되고 규모의 경제를 가정한 경우인 식 (5)와 같은 결과이다. 즉 가구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이 효용최대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식 (17)을 α_2 에 대해 미분하여 θ 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ac{d\theta}{d\alpha_2} = - \frac{u'(\alpha_2 y)}{y u''(\theta y)} [RRA(\alpha_2 y) - 1] \quad (18)$$

α_2 가 1에서부터 점차 감소하게 되면 위험회피도가 1보다 큰 한 θ 의 값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두 번째는 자녀(가구원 2)에 대한 지출로 인한 효용이 자신에 대한 지출로 발생하는 효용과 다른 경우이다. 이 경우 가구의 총효용은

$$u_f = u(\alpha_1 y) + v(\alpha_2 y) + u(\alpha_2 y) \quad (19)$$

여기서 $v(\cdot)$ 는 가구원 1이 가구원 2에 대한 지출로부터 얻는 효용이다. 만약 $v(\cdot) = \lambda_1 u(\cdot)$ 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결과는 이타성이 있는 경우의 분석과 동일하다.

바) 가구원간 효용함수가 다른 경우

가구원간 효용함수가 다른 경우는 부모와 자녀의 효용함수가 다른 경우로 자녀는 부모보다 작은 소득수준에서 동일한 효용을 얻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는 일정수준 소득에 대한 부모 효용함수와 자녀 효용

함수에는 $u_i(\alpha_i y) = u\left(\alpha_i \frac{y}{\gamma_i}\right)$ 의 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의 효용함수는 자녀보다 높은 소득이 필요한 부모의 효용함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우선 가구내 소득배분이 $\alpha_i = \gamma_i$ 로 모든 i 에 대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소득배분은 모든 가구원에게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만약 $\alpha_1 > \alpha_2$ 라면 개인의 효용은 $u\left(\theta \frac{y}{\alpha_1}\right)$ 이 되며 가구의 총 효용은 $2u(y)$, $u\left(\alpha_1 \frac{y}{\alpha_1}\right) + u\left(\alpha_2 \frac{y}{\alpha_2}\right)$, 가 된다.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을 가구와 개인에게 동일하게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2u'(y) = \frac{1}{\alpha_1} u'\left(\frac{\theta y}{\alpha_1}\right) \quad (20)$$

만약 $\alpha_1 > \frac{1}{2}$ 이라면 $\theta < \alpha_1$ 이 성립하여야 하며 이는 가구에 대한 과세를 각 개인의 총효용을 일치시키는 경우보다 가볍게 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첫 번째 가구원의 경우 개인과 동일한 효용함수를 지니고 있지만 개인보다 높은 수준의 효용을 누리게 된다. 이는 두 번째 가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가구가 조세정책상 우대받아야 되는 이유이다. 첫 번째 가구원의 소득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식 (20)을 α_1 에 대해 미분하면

$$\frac{d\theta}{d\alpha_1} = \frac{\theta}{\alpha_1} \left[1 - \frac{1}{RRA\left(\frac{\theta y}{\alpha_1}\right)} \right] \quad (21)$$

여기서 RRA 가 1보다 크면 $\frac{d\theta}{d\alpha_1}$ 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첫 번째 가구원의 소득비중이 높아질수록 가구에 대한 과세우대가 낮

아지게 된다. 만약 $\alpha_1 = \frac{1}{2}$, $\theta = \frac{1}{2}$ 이고 위험회피도(*RRA*)도 1이 라면 α_1 의 값이 커지더라도 θ 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RRA*가 1보다 커다면 α_1 의 증가에 따라 θ 의 값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두 번째 가구 원의 높은 효율성이 첫 번째 가구원의 낮아지는 한계효율성 증가로 덜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구가 가구 총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소득배분을 결정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와 같이 α_1 을 첫 번째 가구원의 소득에 대한 비중 조정변수라 정의하고 α 는 첫 번째 가구원의 소득비중이라 하면 가구 효용, 즉 $u\left(\frac{\alpha y}{\alpha_1}\right) + u\left(\frac{(1-\alpha)y}{1-\alpha_1}\right)$ 최대화를 위한 일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u'\left(\frac{\alpha y}{\alpha_1}\right) = \frac{\alpha_1}{1-\alpha_1} u'\left(\frac{(1-\alpha)y}{1-\alpha_1}\right) \quad (22)$$

윗 조건에 따르면 앞서의 고정된 소득비중 보다 효율적으로 효용을 발생시키는 두 번째 가구원의 소득비중이 높아지게 된다($\alpha < \alpha_1$). 이를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을 가구와 개인간에 일치시키는 최대화조건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frac{1}{\alpha_1} u'\left(\frac{\alpha y}{\alpha_1}\right) = \frac{1}{\alpha_1} u'\left(\frac{\theta y}{\alpha_1}\right) \quad (23)$$

즉 $\alpha = \theta$ 를 의미한다. 이는 가구의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구성원 간 소득의 한계효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사회의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개인과 가구, 여기서는 첫 번째 가구원의 한계효용을 일치시킨다. 개인과 첫 번째 가구원은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므로 최적수준에서는 소득수준도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가구에 대한 과세는 개

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가구의 효용최대화 문제에서 $\alpha < \alpha_1$ 이며 이는 $\theta < \alpha_1$ 이다. 가구는 개인의 효용과 일치하는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갖게 된다.

사) 사회효용함수의 선택

이상의 이론적 결과는 사회효용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가장 낮은 효용을 갖는 개인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목적함수(Maxmin)를 갖게 된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우선 동일한 개인과 가구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규모의 경제가 없을 때는 이전의 결과와 동일하게 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배분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그 결과도 달라진다. 가구 내 소득배분이 차이가 있을 때 가구에 대한 세부담은 더욱 낮아져야 한다. 이는 소득 배분의 차이로 가구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평균소득 개인에 비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는 가구의 세부담이 높아져야 한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동일소득의 개인에 비해 한계효용이 낮아지므로 한계효용을 개인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아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구에 대한 세부담은 이전에 비해 덜 낮추어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이타적인 개인은 낮은 소득수준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용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지출을 부모의 소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녀의 소득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 앞서의 결과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불균등배분의 경우와 같이 가장 낮은 효용수준의 가구원의 한계효용이 개인의 한계효용과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원의 일부가 일정수준의 효용을 갖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에 대한 세부담은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실증적인 관점에서 가구에 대한 과세수준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양한 경제적 관점과 함께 상

대적 과세수준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적인 세부담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한계세율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문요약>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전병목 · 박명호 · 김완석

본 보고서는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경과 관련된 법학적 분석과 경제학적 분석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는 방안, 경제학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검토, 그리고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까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과세단위 변경 논의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보고서는 법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개인단위 과세는 대체로 헌법, 민법 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본질이 부부간의 공유재산의 분할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실상 재산공유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입장 차이는 법률의 일관성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을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과세단위의 선택은 법적인 일관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이 야기하는 개인 및 부부의 경제행위 변화와 이에 따른 세수 및 소득세 재분배 기능의 변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택적 2분2승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인해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미미하게 감소하고, 과세기반 축소 및 면세자 계층의 증가로

세수가 줄어들고, 제도 변경 이전과 동일한 세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의 재분배기능은 미약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과세단위 변경을 통해 법적 일관성은 제고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부단위로의 과세단위 변경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라는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효과가 존재한다. 특히 장기 성장을 위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부부단위 과세제도로의 변경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세단위 문제는 현행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 legal and economic study on the tax unit for income taxation

Byung Mok Jeon · Myung-Ho Park
Wan Souk Kim

This study performs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change in the personal income tax unit from the individual unit system into the marital unit system. It begins by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in terms of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The individual unit system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code is overall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civil law. However, the fact that the current civil law does allow the rights of wife to claim on the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on divorce implies that in the Korean Civil Code, there exists the concept of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This again implies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may not be consistent in dealing with the two, property and income. Therefore, introducing elective marital income splitting may be worth considering as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 consistency of the current legal system.

Permitting married couples to split income for income tax purposes may provoke a variety of economic effects. According to our economic analyses,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s estimated to fall since they will face higher marginal tax rate under

the income splitting system. This causes to lower family income level but not substantially. In addition, tax revenue becomes smaller due to the reduction of tax base and the number of taxpayers with positive taxable income. In order to maintain tax revenue neutral,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overall income tax rate. The higher overall tax rate exerts a positive impact on the income distribution, however, the magnitude is not meaningful.

In conclusion,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can be improved by adopting elective marital income splitting. However, its positive economic impacts are not substantial. Moreover, the fact that elective marital income splitting have an effect of lowering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does not coincid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goal, such as boosting potential economic growth by inducing higher married women's labor supply. After considering these aspects, we conclude that it is sensible to keep the current individual unit system.

〈著者略歷〉

전병목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미국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Michigan University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완석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 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
조문경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研究報告書 08-07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2008년 12월 22일 인쇄
2008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전병목 · 박명호 · 김완석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 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8

ISBN 978-89-8191-408-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9,000원